의정활동보고서

제219회 정례회(2007. 11. 13 ~ 12. 21)



경상북도의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조병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219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민을 위한 지역의정 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나 청년실업문제,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의 어려움, 사회양극화 심화, 유가 고공행진 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가짜학위와 학력파문, 각 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아프칸 피랍사건 등으로 나라 안팎은 조용한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도의회에서는 오로지 300만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왔으며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불편한 사항 들을 해소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제고, 경주세계문화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인성함양과 기본에 충실하는 교육, 창의력 개발 등 금년 한해 동안 경북도정과 교육행정을 차질 없

이 추진해온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해의 의정활동을 총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도민의 생활안정에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등 합리적 자원배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한데모아 도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오는 11월 15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알차고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千

차 례

Ⅰ. 개 황 ·····

Ⅱ. 의사일정 ·····

1. 소 집 ·····

2. 회 기 ·····

3. 활 동 ·····

가. 본회의 ·····

나. 위원회 ·····

Ⅲ. 의안 처리 ·····

1. 본회의 ·····

2. 위원회 ·····

Ⅳ. 민원 처리 ·····

1. 청 원 ·····

2. 진 정 ·····

가. 접 수 ·····

나. 처 리 ·····

Ⅴ. 본회의 보고사항 ·····

1. 의안 접수사항 ·····

2. 조례공포 사항 ·····

3. 보고서 접수 ·····

4. 의회행사 ·····

5.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

6. 기타 의정활동사항 ·····

Ⅵ. 5분 자유발언 ·····

Ⅶ. 도정질문 ·····

부 록

□ 조례안 ·····

□ 동의안 ·····

□ 예산안 ·····

□ 기타안 ·····

Ⅰ.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19회 정례회는 2007년 11월 13일 11:00 개회하여 12월 21일까지 39일간의 회기 동안 6차의 본회의와 연 67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1월 13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19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08년도 경상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8년도 중기지방 교육재정 계획 보고의 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했다.

휴회기간인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1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조례안 등 소관 상임위별로 안건을 심사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1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에 관한 질문(박기진 의원, 손덕임 의원, 윤창욱 의원)을 하였으며,

제3차 본회의를 11월 27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김영기 의원, 이종원 의원, 김종천 의원)을 하였으며,

제4차 본회의를 12월 4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2007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

한 후 산회했다.

제5차 본회의를 12월 14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후 산회했다.

제6차 본회의를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 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등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조례안,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안,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제·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승인·의결하고 제219회 정례회를 폐회 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정례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7-18호 (2007년 10월 31일)

라. 집회일시 : 2007년 11월 13일(화)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7년 11월 13일 ~ 12월 21일 (39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6회 (누계 38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 정 보건복지	교육환경	농수산	통상문화	건설소방	예결특위
217회까지	281	17	44	41	42	38	34	44	21
218회	67	3	11	11	10	10	7	10	5
누 계	348	20	55	52	52	48	41	54	26

※ 누계는 제8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7.11. 13(화) 11:00 (제1차)	1. 제21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제안 설명 3. 2008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4. 2008년도 경상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2008년도 중기지방 교육재정 계획 보고의 건 6.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2007.11.26(월) 11:00 (제2차)	1. 제21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도정에 관한 질문 ○ 박기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손덕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윤창욱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07.11.27(화) 11:00 (제3차)	1. 도정에 관한 질문 ○ 김영기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이종원 의원(농수산위원회) ○ 김종천 의원(통상문화위원회)	
2007.12. 4(화) 11:00 (제4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2. 2007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7.12. 14(금) 11:00 (제5차)	1.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가결
	2. 2008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3.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4. 2007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2007.12.21(금) 11:00 (제6차)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3.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안	원안가결
	4.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상북도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등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
	10. 경상북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조례안	〃
	11.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2. 경상북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3.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
	1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7.12.21(금) 11:00 (제6차)	16.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7.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8.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9.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안	원안가결
	20.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2.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3.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7. 11. 23(금) 11:00 (제1차)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의회사무처 소관	
2007. 11. 27(화) 16:00 (제2차)	1. 2008년도 예산안 심사(의회사무처소관) 2. 제220회 임시회 회기협의 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2007. 12. 4(화) 12:30 (제3차)	1.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2. 경상북도 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7. 11. 14(수) ~ 11. 22(목) (7일)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보관실, 새경북기획단, 기획조정본부, 경제과학진흥본부 ○ 공무원교육원, 경북교통연수원, 경북개발공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포항지능로봇연구소	
2007. 11. 29(목) 11:00 (제1차)	1.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기획조정본부 2.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조례안 5. 경상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등일괄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7. 11. 30(금) 11:00 (제2차)	1.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경제과학진흥본부 2. 경상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07. 12. 3(월) 11:00 (제3차)	1.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공보관실, 새경북기획단, 공무원교육원 2.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2007. 12. 4(화) 13:30 (제4차)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기획조정본부, 공보관실, 새경북기획단, 공무원교육원, 경제과학진흥본부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원안가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7. 11. 14(수) ~ 11. 22(목) (7일)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지원국,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 포항·안동·김천의료원, 자연환경연수원, 노인전문간호센터, 도립경도대학	
2007. 11. 28(수) 11:00 (제1차)	1.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경도대학, 감사관실, 행정지원국(자연환경연수원 포함)	
2007. 11. 29(목) 11:00 (제2차)	1.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보건복지여성국(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	
2007. 11. 30(금) 11:00 (제3차)	1. 경상북도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7.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경상북도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9. 경상북도 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원안가결 〃 수정가결 원안가결 〃 〃 〃 〃 상정유보 원안가결
2007. 12. 4(화) 14:00 (제4차)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경도대학, 감사관실, 행정지원국(자연환경연수원 포함), 보건복지여성국(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7. 11. 14(수) ~ 11. 22(목) (7일)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해양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소득개발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보건환경연구원 ○ 도교육청(직속기관 포함), 안동·문경·의성·예천·김천·구미·상주·경주·영천·경산·청도교육청	
2007. 11. 28(수) 11:00 (제1차)	1. 2008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 2008년도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3.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2007. 11. 29(목) 11:00 (제2차)	1. 200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수정가결 〃
2007. 12. 4(화) 13:30 (제3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2.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3.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원안가결 〃 원안가결 〃 〃 수정가결 수정가결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7. 11. 14(수) ~ 11. 22(목) (7일)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가축위생시험소, 구미화훼시험장, 경경정보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생물자원연구소, 풍기인삼시험장,	
2007. 11. 29(목) 11:00 (제1차)	1. 2008년도 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농수산국	
2007. 11. 30(금) 11:00 (제2차)	1. 2008년도 예산안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 농업기술원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원안가결
2007. 12. 4(화) 13:30 (제3차)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통상문화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7. 11. 14(수) ~ 11. 20(화) (4일)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투자통상본부, 문화체육관광국, 경상북도생활체육협의회,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상북도체육회	
2007. 11. 29(목) 11:00 (제1차)	1.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투자통상본부	의안유보
2007. 11. 30(금) 11:00 (제2차)	1.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원안가결
2007. 12. 4(화) 13:00 (제3차)	1.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 투자통상본부, 문화체육관광국	원안가결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7. 11. 14(수) ~ 11. 22(목) (7일)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도시방재국, 소방본부, 종합건설사업소 ○ 구미・영주・울진・김천소방서	
2007. 11. 29(목) 11:00 (제1차)	1.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건설도시방재국	
2007. 11. 30(금) 11:00 (제2차)	1.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소방본부 2. 간담회(건설기계협회)	
2007. 12. 4(화) 13:30 (제3차)	1.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 건설도시방재국, 소방본부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7. 12. 5(수) 10:30 (제2차)	1.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 12. 6(목) 10:30 (제3차)	1.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조정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환경해양산림국, 새경북기획단, 경제과학진흥본부, 행정지원국, 보건복지여성국	
2007. 12. 7(금) 10:30 (제4차)	1.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공무원교육원, 경도대학,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건설도시방재국, 보건환경연구원, 소방본부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7. 12. 10(월) 10:30 (제5차)	1.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문화체육관광국, 투자통상본부, 의회사무처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3.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07. 12. 12(수) 10:30 (제6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4.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5.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토론 및 의결 6.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토론 및 의결 7.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토론 및 의결 8.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토론 및 의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Ⅲ. 의안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27 (153)	27 (153)	22 (121)	5 (32)				
조례·규칙안	소 계	20 (97)	20 (97)	16 (73)	4 (24)				
	의 회 제 안	3 (24)	3 (24)	2 (17)	1 (7)				
	도지사 제 출	13 (54)	13 (54)	11 (42)	2 (12)				
	교육감 제 출	4 (19)	4 (19)	3 (14)	1 (5)				
예산·결산		4 (16)	4 (16)	3 (8)	1 (8)				
동의·승인		2 (16)	2 (16)	2 (16)					
건 의 안		(4)	(4)	(4)					
결 의 안		(7)	(7)	(7)					
기 타 안		1 (13)	1 (13)	1 (13)					

※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규칙	예산결산	동의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29 (161)	27 (153)	20 (96)	(1)	4 (16)	2 (16)	(4)	(7)	1 (13)	(4)		2 (4)
의 회 운 영	2 (20)	2 (19)	2 (9)	(1)		(1)		(4)	(4)	(1)		
기 획 경 제	6 (27)	6 (25)	6 (21)			(3)	(1)			(1)		(1)
행 정 보건복지	9 (32)	8 (30)	6 (24)			2 (6)						1 (2)
교 육 환 경	5 (28)	5 (27)	5 (23)			(4)				(1)		
농수산	(8)	(8)	(5)				(2)	(1)				
통 상 문 화	2 (9)	1 (7)	1 (2)			(2)	(1)	(2)		(1)		1 (1)
건 설 소 방	(11)	(11)	(11)									
특 별	4 (16)	4 (16)			4 (16)							
본회의	1 (10)	1 (10)	(1)						1 (8)			

※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 : 4건〉

①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②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③ 경상북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④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통상문화위원회)

Ⅳ.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4 (29)	(2)	1 (4)	(3)	2 (10)	(1)	(1)	(4)	(2)	1 (2)
의 회 운 영	1 (2)	(1)								1 (1)
기 획 경 제	(3)			(2)			(1)			
행 정 보건복지	1 (3)	(1)	1 (2)							
교 육 환 경	(4)					(1)		(3)		
농수산	(2)								(2)	
통 상 문 화	(4)		(2)	(1)				(1)		
건 설 소 방	1 (10)				1 (9)					(1)
특 별 위원회	1 (1)				1 (1)					

※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4 (29)	4 (29)				
의회운영	1 (2)	1 (2)				
기획경제	(3)	(3)				
행 정 보건복지	1 (3)	1 (3)				
교육환경	(4)	(4)				
농 수 산	(2)	(2)				
통상문화	(4)	(4)				
건설소방	1 (10)	1 (10)				
특별위원회	1 (!)	1 (1)				

※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Ⅴ.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조례안 17, 승인안 2, 예산안 등 4)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경상북도지사 (2007. 11. 2)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기획경제
〃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안	〃
〃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07. 11. 7)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기진,이상태의원 외41명(2007.11.2)	경상북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행정보건복지
경상북도지사 (2007. 11. 2)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경상북도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
〃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2007. 11. 7)	경상북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윤창욱의원외 43명(2007.10.5)	경상북도 도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
경상북도교육감 (2007. 11. 2)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안	〃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2007. 11. 2)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통상문화
경상북도지사 (2007. 11. 9)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각 상임위
경상북도교육감 (2007. 11. 9)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교육환경
경상북도지사 (2007. 11. 9)	2008년도 경상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본 회의
경상북도교육감 (2007. 11. 9)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

2. 조례공포 사항(조례 5, 규칙 1)

이 송 일	이송처	건 명	비 고
2007. 10. 1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2007. 11. 5
2007. 10. 1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2007. 11. 5
2007. 10. 1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운영 조례	2007. 11. 5
2007. 10. 1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 특별위원회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2007. 11. 5
2007. 10. 18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2007. 11. 1
2007. 10. 18	경상북도 의회의장	경상북도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007. 11. 7

3. 보고서 접수

○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연차보고서(도/교육청)

▪ 접 수

- 경상북도 : 2007. 11. 8
- 도교육청 : 2007. 11. 5

▪ 배 부 : 2007. 11. 12

4. 의회 행사

○ 2007년도 의원연수회

- 일 시 : 2007. 10. 18(목) 15:00 ~ 10. 19(금) 12:00 (2일간)
- 장 소 : 김천 파크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및 도의원 전원
- 내 용
  - 전문 및 교양과목 특강
  - 친교의 시간
  - 문화유적지 및 사업현장 방문

5.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기획경제	2007. 10. 12	그랜드호텔	•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초청 간담회
〃	2007. 11. 1	청 송 주왕산일원	•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연찬회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방안 논의 - 주왕산국립공원 탐방 등
행정보건복지	2007. 10. 16	경상북도의회 도민의 방	•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자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통상문화	2007. 10. 9	광주	• 전국체전 경상북도선수단 방문

6. 기타 의정활동사항

○ 전국체전참가 경북선수단 결단식

- 일 시 : 2007. 10. 4(목) 14:00
- 장 소 : 경산고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도청직원 한마음체육대회

- 일 시 : 2007. 10. 6(토) 09:00
- 장 소 : 경일대학교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민주평통 자문위원 연수대회

- 일 시 : 2007. 10. 8(월) 10:30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전국체전 개막식

- 일 시 : 2007. 10. 8(월) 18:00
- 장 소 : 광주월드컵경기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동경 도민회 환송 만찬

- 일 시 : 2007. 10. 9(화) 19:00
- 장 소 : 부산 롯데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북 장애인생활체육대전

- 일 시 : 2007. 10. 12(금) 10:30
- 장 소 : 구미 시민운동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북문화재연구원 신축 기공식

- 일 시 : 2007. 10. 12(금) 14:00
- 장 소 : 영천시 금호읍 현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이상효 통상문화위원장, 도의원

○ 도민건강걷기대회

- 일 시 : 2007. 10. 13(토) 10:00
- 장 소 : 경주 보문단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포스코 연료전지공장 착공식

- 일 시 : 2007. 10. 16(화) 11:00
- 장 소 : 영일만 지방산업단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07 동북아 국제경제포럼 및 다자간 무역상담회

- 일 시 : 2007. 10. 16(화) ~ 17(수) 2일간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이상효 통상문화위원장, 도의원

○ 전국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대회

- 일 시 : 2007. 10. 16(화) 17:0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북북부권 경제활성화 포럼

- 일 시 : 2007. 10. 19(금) 14:00
- 장 소 : 문경 여성회관
- 참 석 : 장대진 교육환경위원장

○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 일 시 : 2007. 10. 19(금) 19:00
- 장 소 : 상주 시민체육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대한민국 영화연기대상 시상식

- 일 시 : 2007. 10. 19(금) 17:00
- 장 소 : 경주 엑스포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전국의장협의회

- 일 시 : 2007. 10. 23(화) 14:30
- 장 소 : 충북 청주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북 쌀의 날” 행사

- 일 시 : 2007. 10. 23(화) 15:00
- 장 소 : 엑스포 화랑공연장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이상효 통상문화위원장, 도의원

○ 캐프투자유치 MOU체결

- 일 시 : 2007. 10. 23(화) 18:00
- 장 소 : 대구은행회의실
- 참 석 : 이상효 통상문화위원장, 도의원

○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개원식

- 일 시 : 2007. 10. 24(수) 14:00
- 장 소 : 울진군 죽변면
- 참 석 : 장대진 교육환경위원장, 도의원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7. 10. 25(목) 15:00
- 장 소 : 전남도의회
- 참 석 : 김응규 운영위원장

○ 제4차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 일 시 : 2007. 10. 26(금) 15:00
- 장 소 : 도청 제2회의실
- 참 석 :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

○ 경북약사회원 체육대회

- 일 시 : 2007. 10. 28(일) 14:00
- 장 소 : 영천 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지역균형발전 촉구대회

- 일 시 : 2007. 10. 30(화) 10:00
- 장 소 : 대구 국채보상공원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러시아 이르쿠츠쿠주 방문단 의회방문

- 일 시 : 2007. 10. 31(수) 17: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의장단, 상임위원장

○ 제9회 경북학생축제 작품전시회 개관식

- 일 시 : 2007. 11. 1(목) 11:00
- 장 소 : 안동 체육관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도의원

○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해단식

- 일 시 : 2007. 11. 1(목) 15:00
- 장 소 : 김천 실내체육관
- 참 석 : 김응규 운영위원장

○ 균형발전촉구 천만인 국민대회

- 일 시 : 2007. 11. 2(금) 13:00
- 장 소 : 서울역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폐막식

- 일 시 : 2007. 11. 5(월) 17:00
- 장 소 : 엑스포 백결공연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2007 일자리창출 대토론회

- 일 시 : 2007. 11. 6(화) 14:00
- 장 소 : 그랜드호텔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 제12회 농업인의 날

- 일 시 : 2007. 11. 7(수) 10:00
- 장 소 : 농업인 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방유봉 농수산위원장, 도의원

○ 월성 원자력환경센터 착공식

- 일 시 : 2007. 11. 9(금) 15:00
- 장 소 : 경주 양북면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상북도 청년연합회 창립대회

- 일 시 : 2007. 11. 10(토) 17:00
- 장 소 : 영천 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Ⅵ. 5분 자유발언

□ 2007년 11월 13일(화) 제219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 김기홍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영덕출신 김기홍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관용 도지사님께 지난 10월26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바와 같이 1950년6월25일 전쟁 당시 동해안의 유일한 상륙작전지인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에 장사상륙작전과 관련하여 장사상륙작전기념관건립 및 추모행사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정착에 새로운 지표를 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 합의로 통일을 향한 평화와 경제협력이라는 화합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북한은 완전한 개혁 개방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동족상잔의 뼈아픈 참상을 국민들과 후세에 널리 알려 유비무한의 자세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장사상륙작전은 6.25 전쟁당시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국군이 낙동강을 최후 방어선으로 삼아 적과 치열한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을 때 유엔군 총사령관인 맥아더장군이 총 반격전을 위한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고 그 양동작전으로 시작된 전투로서 인천상륙작전 하루 전인 1950년9월14일 장사상륙작전에 투입된 용사는 육군본부 직할독립 제1유격대대 대원 772명이며, 이중 90% 이상이 호국일념으로 지원입대한 주로 경남지역의 학도병으로서 군복도 없이 학생복을 입은 그대로 번번한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참전하였으며, 전투결과 태풍으로 전함이 좌초되는 등 악전고투 끝에 1950년9월14일 영덕군 남정면 장사해안에서 감행된 장사상륙작전에 성공하여 적 후방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퇴각로를 봉쇄함으로 인하여 하루 뒤인 1950년9월15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다 하고 수도 서울을 탈환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학도병은 139명이 장렬히 전사하고 92명이 부상당했으며, 수십명의 행불자도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후 맥아더장군께서는 제1유격대대가 수행한 장사상륙작전은 최고의 전투로 찬사받을만 하며 대원들이 용기와 나라사랑하는 희생정신은 한국 젊은이들의 귀감이라는 서신을 친필 서명하여 보낸 바 있습니다.

그 때 사망한 동지 학도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잊지 않기 위하여 1980년10월14일 생존한 유격대원들이 참전유격동지애를 결성하고 영덕군과 함께 매년 조촐하게나마 합동위령제를 지내오고 있으며, 1991년9월14일 각계각층이 모금하여 현재 장사해수욕장 내에 소규모 위령탑만 건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인명피해가 전사 29명, 실종 1명, 부상 219명으로 장사상륙작전 전사자와 비교해 볼 때 5분의1정도로써 당시 이곳 장사전투의 참상이 얼마나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직할시 승격과 개항100주년기념사업으로 1984년9월15일 대지 2만4,347㎡에 시비 28억원과 시민모금 15억원 등 총사업비 43억원으로 전시관 1,973㎡를 비롯한 야외전시장, 야외공연장, 자유수호의탑, 소공원 등 기념관을 건립하여 후세들이 나라사랑하는 정신을 배우는 교육장과 전적관광지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볼 때 비록 뒤늦은 감이 있지만 경상북도에서도 기념관을 건립하여 자유수호전적지로 가꾸고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동족상잔의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호국정신 선양사업을 문화적 차원에서 적극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생존해 계시는 참전용사 39명과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를 희생하여 조국을 지킨 호국용사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하여 금년 9월14일 경상북도와 영덕군 등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제1회 장사상륙참전전몰용사추모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사상륙작전전몰용사추모행사를 경상북도에서 도단위 이상 행

사로 확대 추진하여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정신을 심어주고 그 때의 교훈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참전용사 대부분이 정규군이 아닌 학도병이라는 이유로 전쟁사에서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장사상륙작전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며, 장사리 해변 바닷속에 묻혀있는 참몰 학도병들의 유해발굴과 아직까지 인양되지 못한 문산호의 잔해를 인양하여 어린 나이에 전투에 참가한 꽃다운 청춘을 조국에 산화한 어린 학도병들의 희생을 재평가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상륙작전지인 장사상륙작전전몰용사추모기념관건립 및 추모행사에 대해서도 경상북도를 비롯한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예산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2007년 12월 21일(금) 제219회(정례회) 제6차 본회의

◎ 송필각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먼저 오늘 정해년을 마무리하는 경상북도의회 바쁜 일정에 저한테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9일 대통령선거에서 선거 사상 초유의 520만표를 능가하는 초유의 득표차로 당선하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 동료의원님들과 더불어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좀 먹고 살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열심히 도민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김관용 지사님은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셔서 1년 동안의 마무리를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힘쓰신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1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름 아닌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이러한 아름다운 꽃이 있다는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소개는 울

릉도 출신 의원님이 드리는 것이 마땅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지금 신문이 아마 전부 놓여 있을 겁니다. 복사된 신문이, 울릉도에 있는 손영극 군이 울릉종합고등학교 1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46세 된 손상수 씨라는 아버지가 간경화로 인해서 사경을 헤맸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간을 이식하면 합당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마는 의료법에 의한 연령이 되지 않아서 연령이 16세가 되는 그 다음날 바로 아버지에게 간이식을 허락한 그런 아름다운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간 이식 수술을 많이 합니다마는 16세 된 소년이 이렇게 연말을 맞아서 경상북도에 훌륭한 선물을 준 것에 대한 소개 말씀을 빠뜨릴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내용은 지금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마는 한시 시인이시자 또 시인이신 백송 이건우 선생님의 시로 인해서, 한국서예특선을 하신 남원 이상배 선생님의 글로써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 일어나 일을 대구광역시에 계시는 두 어른께서 이렇게 장학금을 마련하는 등 너무 감사한 마음을 뿌리칠 수 없어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두 어른, 이건우 선생님은 연세가 84세이십니다. 또 이상배 선생님은 73세이십니다. 두 어른 다 공히 10년, 35년간 교직에 몸 담으시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일은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없다, 악한 일을 해서,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박사를 따고 교수직에 있는 사람이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하는 일은 대서특필이 되고 이 아름다운 일은 그냥 묻어지는 이 사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가 나서서 이 일을 좀더 사회에 알리고 장학제도라도 만들고 비라도 만들어서 귀감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하는 큰 뜻으로 이렇게 오늘 자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해석은 잘 못합니다마는 읽어드리겠습니다.

國難協力盡命忠, 국가가 어려울 때 모든 국민이 협력하여 충성을 다하고, 父患代肝再活孝라,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그 간을 절개하여 효도를 다하고, 忠孝雙全仁義報라, 충성과 효도는 같이 인의와 보답하는 그런 뜻을 같고 있고, 善行花發于山國이라, 선행의 꽃이 우산국, 울릉도에 꽃 피웠도다 하는 싯귀와 더

불어 훌륭한 서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옆에는 分身活親孝之鑑이라, 자신의 몸을 나누어서 아버지를 재생시키는, 다시 사시게 하는 효도는 모든 이의 귀감이 된다는 뜻이 또 저기 있습니다. 하여 공교롭게도 사자성어가 忠孝報國이라는 사자성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더 우리가 미담스러운 일들을 소개하고 또 홍보하여 정말 귀감이 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 경상북도에 홍보가 되고 퍼져서 대한민국도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손상수 씨는 경상북도 도민이요, 또 울릉군의 섬나라의 도민입니다. 또한 손영극 군은 울릉종합고등학교의 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계의 앞날은 밝고 경상북도민의 화합과 단결은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이 두 분의 어른이 78만원, 88만원의 장학금을 이 학생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 또 도지사님 이하 공무원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이하 교육공무원도 좋습니다. 의원님도 좋습니다. 이것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또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두서없이 5분 자유발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Ⅶ. 도정질문

□ 2007년 11월 26일(월) 제219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 박기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성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기진의원입니다.

제8대 도의회가 개원된 후 두 번째로 맞는 정례회에서 선진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인재양성에 노심초사하시는 조병인 교육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 분야에 대해 질문코자 하니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어마을 조성 추진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와 함께 세계화의 심화로 세계 공용어인 영어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어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영어마을 조성을 공약 1순위로 정하여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관용 도지사께서도 공약사항인 영어마을 조성을 위하여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현재 최종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운영중인 20여 개소의 영어마을 대부분이 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콘텐츠마저 없이 흉내만 내고 있는 영어마을이 많아 대부분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마을의 선두 주자라 할 수 있는 경기도의 경우 9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립한 파주 영어마을에 대한 2006년도 수지분석 결과 자체 수입은 52억원인 반면 지출은 210억원으로 158억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영어마을 조성비를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관내 영진전문대학 영어마을에 매년 1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민간위탁방식을 채택한다고 합니다.

영진전문대학에서는 우리 도 관내 칠곡군 일원에 2006년 9월부터 3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10월30일에 영어마을 준공식을 가졌으며, 외국생활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상황체험실, 심화학습실을 갖추고 자격증을 가진 원어민 교사를 다수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도내에는 대구가톨릭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경주 영어마을과 영주 영어마을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의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야 한다는 심정에서 타 자치단체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도의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영어 체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연구과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의원은 도지사께서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강한 의지에는 동의하지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 효과성의 측정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행정의 요체는 어떤 사업이든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산출을 얻는 데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도내에 설치된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우수한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고 있는 가장 우수한 영어마을을 선정하여 도민에게 영어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막대한 시설비 부담 없이 영어마을 조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특히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영어마을 사업을 우리 도와 대구광역시가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공동 협력하여 추진한다면 예산의 절감이나 시너지 효과 발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근본적인 농업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4월2일 농촌지역 많은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지도 벌써 7개월이 넘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자동차 등 공산품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의 철폐와 계절관세 적용 등으로 전국 제일의 농도인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며, 우리 농민들은 극도의 좌절감과 위기의식이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기응변식, 주먹구구식, 일회성 단기미봉책만 쏟아내고 있어 농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더욱 더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지사께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우리 농산물 보호의 근본적이고도 항구적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지역구인 성주군은 농업인의 70% 이상이 전국 참외 생산량의 57%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명품 참외를 생산하여 연간 2,500억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근 칠곡군과 김천시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전국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제일의 참외 주 생산단지입니다.

문제는 한·미 FTA 협상에서 이러한 참외와 경합성이 가장 강한 미국산 오렌지를 봄철 3월에서 5월까지 계절관세가 적용되어 수입되고 7년 후에는 관세가 완전 폐지됨으로 인하여 참외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엄청난 농업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참외 피해액 조사분석 결과서를 보면 참외 수익은 한·미 FTA 이행 5년차에 최저 180억원에서 최대 702억원, 10년차에는 최소 220억원에서 최대 837억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참외관련 농자재 등 직·간접 피해액 96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소득 50%에 가까운 1,000억원의 소득 격감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외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근본적인 피해 방지 대책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참외 재배농가에서는 매년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사과, 배 등 다른 과수와는 달리 참외는 농업 보험대상 작물이 아님에 따라 재해 발생시 농가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으므로 참외도 농업 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초고령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설 현대화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참외 재배시설 자동화에 필요한 철재 파이프 자동개폐기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획기적으로 증액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참외가 한·미 FTA 협상 이행 대비 피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드림밸리 혁신도시 및 김천 KTX 역사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 시·군 연계개발 발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 드림밸리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김천시 남면, 농소면 일원 380만3,000㎡에 인구 2만5,000명 계획으로 2012년 12월 완공 목표로 지난 9월20일에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김천 KTX 역사 건설사업도 2010년 12월 완공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김천시의 발전은 물론이지만 경상북도 전체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전해 오는 한국도로공사 등 교통관련 기관의 기능을 면밀히 분석하여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물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업기능군과 연계하여 북부권 BT산업을 발전시키고 상주, 고령, 상주, 문경 등 지역특화산업과 접목하여 최첨단 생명산업의 발전을 통해 한·미 FTA 시행에 대비하고 지역농업 생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천 역사 건립과 연계하여 도내 남부권과 동남권, 북부권의 교통 물류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북 드림밸리 혁신도시와 김천 KTX 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인근 시·군 동반 성장은 물론, 경상북도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성주지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김천과 성주를 연결하는 지방도 905호선이 조속히 4차선으로 확포장 되어야 한다고 보

는데, 도지사께서는 혁신도시가 준공되는 2012년 이전까지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포장을 완공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산국립공원 관광벨트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족의 영산인 가야산은 조선 8경의 하나로서 1972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었으며, 공원구역 60.56㎢의 61%를 차지하는 37㎢가 성주군에 속해 있으며, 주봉인 칠불봉 1,433m도 성주군에 속해 있습니다.

수륜면에는 만물상, 상아덤, 동성봉과 신라 천년의 고찰 법수사 폐사지와 현재 복원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심원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가천면에는 만귀정, 마수폭포, 포천계곡과 독용산성이 위치하고 있고 금수면의 성주호, 한강 정구 선생의 무흘 9곡으로 유명한 대가천이 구비 구비 흐르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야산 국립공원이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홍보도 부족하여 2005년도 공원입장객이 고작 5만6,000명으로서 합천군 가야산 국립공원 43만8,000명, 주왕산 국립공원 43만2,000명, 소백산 국립공원 34만5,000명에 비하면 불과 14%내외의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야산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는 도지사께서 주창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맥상통하므로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관광산업진흥본부 신설을 계기로 가야산국립공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산 국립공원구역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야산은 1972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 당시 행정편의주의적, 획일적으로 구역을 지정하여 경계부위에 공원으로 묶인 수륜면 백운리와 봉양리와 가천면 법전리에 있는 전, 답, 식당, 그리고 주택의 화장실, 비닐하우스, 간이축사 등의 시설조차도 공원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잇으며, 또한 엄청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역 주민의 민생안정 차원에서 공원구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된 구역을 조속한 기간 내에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중앙관계부처에 조속한 공원구역 재조정을 건의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 교원 남녀 양성균형 임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남자 선생님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할 만큼 남자 교사의 부족현상은 매우 심각한 것이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일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초등교사 중 여교사 비율은 1975년도에는 34%였으나 2006년도에는 2배 이상인 72%에 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현재 초등교사 중 여교사 비율이 62%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경북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305명 중 여성합격자가 63%인 19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여교사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게 되어 10년 후에는 여교사가 학교선생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학교운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의 담임을 남자선생님이 맡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정서도 고려하고 더욱이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남자와 여자의 인성적, 사회적 역할과 상호존중 등을 인지시키는 상호 보완적, 교육적 기대효과 등을 위해서 자연적인 남녀 선생님 성비균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도적으로라도 초·중학교까지는 남녀교사 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초현상이 더욱 심화되기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교육대의 경우 입학시부터 남학생 입학 할당비율을 확대적용하고 중학교를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 임용고사 시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한 바 있는 여성공무원 20%~30%/까지의 채용목표제와 금년말까지 시해중인 어느 한 성이 70% 초과를 제한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및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 2%이내 채용목표제 사례를 참고해서 어린 자녀들의 균형적인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일정비율 남자교사 임용할당제를 도입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교육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 사택관리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전수 조사한 사택관리 개선방안 결과보고서를 보면,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총 사택수는 2,386동으로서 이중 시설노후화와 협소, 교통 및 주거환경 변화 등으로 입주를 기피하여 활용하지 않고 방치 중인 사택수가 13%인 313동이며, 노후화된 건물이 15%인 361동이고, 철거대상 건물이 2.5%인 60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후화 되고 미활용중인 사택으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항의성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장기간 미입주로 인한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 가중으로 교육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시의 동지역은 지역여건상 개인별로 주택구입이나 임차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도, 시군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라도 교사 본인이 주택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되 대신 전세나 주택구입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주여건이 좋지 않아 쾌적한 주택 구입이나 임차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도서·벽지를 포함한 면지역에 위치한 학교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지역여건과 필요 사택수 등을 고려하여 면소재지 등에 필요한 연립사택을 신·개축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아울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현재 교육청과 학교장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사택관리권을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입주희망자에게 최소한의 유지보수비용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사택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문제점이 많은 사택정비추진대책과 필요한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질문 >

○ 국장께서는 금년 7월달에 성주 참외농가에 ‘담배가루이’, 또 ‘온실가루이’라는 아주 새로운 신종 해충이 만연해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담배가루이가 한 70%, 온실가루이가 한 30% 정도 된다고 듣

고 있는데, 이 담배가루이는 성충과 유충이 잎 뒷면에 같이 기생해서 식물체를 흡즙함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받은 식물은 생육이 억제되고 또 잎이 오그라드는 증상을 가졌고, 피해면적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그래도 담배가루이를 죽이는 살충제가 없어서 농가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만 있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담배가루이는 비닐하우스 안에 고온현상에서 특히 많이 번식하는 그러한 해충인데, 내년도에도 이 담배가루이가 번성하리라고 지역의 농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국장께서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담배가루이 방제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내년도에 또 다시 이런 현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초기에 진화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 도지사님, 또 조병인 교육감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과 농촌은 세계 무역자유화의 물결 속에 바람 앞의 등불처럼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어서 본격적으로 미국산 오렌지가 수입되면 참외의 경우에는 소비량 감소는 물론 가격하락 등으로 참외재배농가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농민들은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역에서 참외가 생산하는 생산비중과 자연재해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서 참외는 반드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작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도 중앙에 여러 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사님께서 참외 자동화에 필요한 자동개폐기, 참외재배시설 자동화를 하는데 올해 25억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 7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해서 지원해 주시겠다고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평균 연령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고, 또 각종 농자재 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참외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의 지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참외재배시설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노동력 절감의 효과가 있는 참외재배시설 자동화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덕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사랑하고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관용 도지사님과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손덕임의원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생활물가는 급등하고 있으며 피부로 느끼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서민들에게 다시 일자리 창출의 환경을 만들고 외환위기 이후 계속 되고 있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3백만 경북도민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반성과 보다 숭고한 사명감으로 더 분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일만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1세기 동북아 경제권 형성과 대북방 교역의 전략적 거점항 개발을 통한 환동해 물류중심 도시구현을 위해 사업비 1조7,277억원을 들여 부두 15선식, 방파제 8.8km를 지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영일만항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항 영일만항은 21세기 환동해권 교역의 중심 거점 항으로 대구·경북 배후권 지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차별화된 기능성 항만으로 개발하여 동해안 개발 및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항, 울산항, 마산항은 환태평양 및 동남아교역의 중심항으로 하고, 포항 영일만 신항은 동북아 및 북방교육의 중심으로 구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이것을 포함하여 경북도의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영일만항 건설은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공사가 15년째 계속되면서 사업추진마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항과 함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과 혁신개발분야 지원사업 등에도 포항 등 경북 동해안권은 배제되고 신규사업투자 부문에서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영일만신항 북방파제 2단계사업에 총사업비 752억원 중에서 겨우 20억을 배정함으로써 생색용 지원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총사업비조차 확정되지 않은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에는 100억원, 평택당진항 방파제호안 등 보강사업비 673억원 중 44%에 달하는 284억원을 배정하여 서남해안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일만항 개항과 함께 포항이 명실상부한 국제물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의 물동량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훈춘, 니카타 등 역내도시들과 상호협력을 통한 활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후단지 개발은 2015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자체적인 물동량 창출이 절실한 바 이에 대한 향후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는 산자부의 전국 16개 광역시·도 투자유치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북의 효과적인 투자유치전략과 그에 상응한 노력들로 이루어진 값진 성과이기에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해외시장개척단을 비롯한 중소기업제품 해외세일즈에 있어서 보다 실익위주의 정책과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제품 해외세일즈와 관련하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전시회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실적 등과 관련된 예산의 증가액은 2003년 4억800만원에 대비하여 2007년 현재 10억6,800만원으로 16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제전시회 박람회 참가에 따른 예산은 각각 2003년 2억원과 1억5,800만원에 대비하여 2007년 현재 5억2,000만원, 4억4,800만원으로 각각 160%, 183% 증가되었고,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개최 예산의 증가액도 2003년 5,000만원에 대비하여 2007년 현재 1억으로 100%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증가의 추이와는 달리 중소기업제품 해외세일즈의 실적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바 해외세일즈 총 성사금액은 2003년 4,907만5,000불에 대비하여 2007년 현재 7,472만8,000불로서 52.3% 증가에 그쳤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해외시장개척단은 예산의 증가는 2003년 2억원 대비 2007년 현재 5억2,000까지 160% 증가되었음에도 해외세일즈 추진에 따른 성사금액은 2003년 3,561만2,000불에서 2007년 현재 3,976만3,000불로 11.7% 증가하였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2007년 올해 해외시장개척단의 예산이 5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4억5,700만원에 대비하여 13.7% 증가한 금액이지만 해외시장개척단 추진에 따른 성사금액은 11월 현재 오히려 지난해보다 3,620만불 감소한 금액입니다.

또한 해외박람회 참가에 따라 수출하기로 한 성사금액이 2003년 1,196만3,000불 대비 2007년 현재 2,495만2,000불로 108.6% 증가하였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의 성사금액은 2003년 150만불에서 2007년 현재 1,001만3,000불로 무려 567.5%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을 가장 적게 들인 해외바이어초청이 가장 성과를 많이 올린 반면에 많은 예산을 들인 해외시장개척단이나 해외박람회 참가의 성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북도의 중소기업제품 해외세일즈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해외세일즈 추진에 있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을 위해 항공료, 현지 통역 및 상담장소 임대료 등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참가업체의 상담, 수출실적 등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시장개척단의 성과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에 상담, 수출, 바이어 관리가 파견활동보다 더 중요함에도 그에 대한 대책은 찾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상담실적의 수출실적으로의 반영 여부도 개별업체들의 보안유지나 경영정보 대외비 등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성사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해외세일즈를 위한 해외시장개척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며 나아가서는 해외시장단 개척이 관광외유성행사라는 빌미를 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와 아울러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따른 예산투입과 그의 객관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도의 R&D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단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성장동력임은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 중에서 R&D 즉, 연구개발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현재 기금을 제외한 정부예산 중 지역으로 구분된 것을 대상으로 우리 경북의 R&D 분야 국가예산 확보현황을 보면 전체금액이 1,829억원으로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중간정도의 예산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액은 지난 2002년 1,028억원에 대비하여 보았을 때 77% 정도 늘어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같은 기간에 울산광역시가 636%, 전라남도가 435%, 경상남도 151%, 제주도 134%, 전라북도 114% 등으로 증가되었기에 다른 시·도에 비하면 우리 경북의 R&D 예산의 증가율이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봤을 때 우리 경상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을 가지기 위해서 R&D 예산의 확보는 물론 연구개발의 인프라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더욱이 정부는 현재 2008년도 R&D 예산을 10조7,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R&D 투자의 방향을 선택과 집중에 두고 기초연구 25% 이상, 지방 R&D 40% 이상이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

지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과학기술부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R&D사업에 대해 역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자체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중앙정부가 대응자금을 역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지방의 노력과 의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향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경북관광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2007년은 경북관광의 해이며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등 관광부분에서의 성과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외적인 관광 성과와는 달리 경북관광의 현주소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국민여행실태조사결과를 보면 관광객의 여행방문지 중에 숙박여행 상위 3위안에 경북은 3년 연속으로 명함도 못 내밀었으며 당일여행 상위 3위안에서도 2005년도에 경북이 3위를 차지한 것 외에는 2006년, 2007년 연속으로 순위 안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방문지, 향후 방문희망지역을 조사하는 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3위안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방한외래객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도 경북관광의 현주소는 암담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2007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서울이 75.5%로 가장 높았고 인천, 부산, 제주도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지만 경북에서는 경주만이 6.1%로 9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16개 시·도별 방문비율에서는 서울이 75.5%로 단연 1위이며 경북은 7.3%로 강원, 제주에 이어 7위의 순위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방한 외래객의 인상깊은 방문지로는 명동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의 관광지는 아예 상위 10위권 순위 안에 들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들은 경북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선점할 경북도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광산업육성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다문화가정은 우리 농촌의 새로운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청 인구동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의 시·도별 국적현황에서 우리 경상북도는 모두 1,885명으로 서울의 6,168명, 경기도 6,492명, 그리고 경남 2,240명에 이어 전국 총 여성결혼이민자 3만208명 중에서 네 번째인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관심은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거나 심지어 의도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회피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문제는 바로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입니다. 장차 지역사회의 한 축이 될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현재 기초적인 우리말조자 제대로 못하고 심각한 학습부진장애를 겪는 등 교육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2000년 이후 본격화된 이주여성의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어린이들이 내년에 모두 130여명이 취학예정이며 조만간 농어촌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내국인 부모 자녀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경북지역 결혼이민자 가족의 출산자녀수를 보면 모두 2,795명에 이르고 이 중에서 취학자녀는 794명이며 미취학자녀는 1,983명에 이릅니다. 이들에 대하여 현재 경북교육청에서는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자녀교육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이해와 관련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보면 경북은 평균 11개 정도로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며 그에 참여하는 학생수도 200여명에 지나지 않아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0번째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취학자녀 중에는 초등학생이 83.2%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 후 프로그램은 10개 정도에 지나지 않아 전국 12번째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통계수치는 그만큼 경상북도교육청의 다문화 이해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빈약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취학자녀 1,983명의 보육실태를 보면 공식적인 정규보육시설인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는 전체의 9.6%에 지나지 않는 190명에 불과하며 그냥 집에

있는 경우는 1,121명으로 무려 56.5%에 이릅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 상당수가 우리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심각한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취학자녀뿐만 아니라 미취학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공교육에 의한 교육적 지원이 어렵다면 민간사회단체와 공동으로라도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보충질문 >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환경해양산림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포항 영일신항만과 관련하여 질문한 내용 중에서 포항 영일신항만을 차별화된 기능성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건설단계에서부터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 서비스 항만으로 차별성을 강화하고 앞선 IT 기술을 통해서 통합관리체제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주변국의 화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좋은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창욱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미시 출신 윤창욱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2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7년12월19일 대선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300만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 재창조를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인적자원 양성에 열성을 다 하고 계시는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라 생각하시고 시종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북지역의 산업단지 수요예측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일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국내외기업유치를 가장 많이 한 자치단체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관용 지사님과 관련 실·국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의 조성은 경북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뿌리이며 줄기를 가꾸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체계적인 조성은 경북발전을 선도하는 주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생물산업, 해양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부품소재산업 등 주요 전략사업에 대한 산업단지의 특성화 계획과 산업단지 수요예측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경북혁신도시조성을 위한 최대의 과제는 공공지원기관이 입주하는 혁신도시를 선도할 산업생산기능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경북 혁신도시가 입주하는 김천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인 상주, 구미, 성주를 연계한 산업생산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공적인 경북혁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과 임직원들을 위한 교육, 의료, 문화 등 선진화된 생활기반 조성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산업생산 기능과 선진화 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유지역」에 준하는 인허가 조치 완화 및 인센티브 제

공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마련 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로스쿨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로스쿨 도입과 관련 시·도간 대학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각 시·도간에도 로스쿨 유치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으며 로스쿨 유치가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와 국가의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이고 권력의 지방분산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적 인프라측면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스쿨은 지역 인재유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학부를 마친 인재들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로스쿨이 없는 지역대학의 경우에는 경쟁력을 잃어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지역간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로스쿨을 유치하려는 각 시·도에서는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과 노력 등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강원도에서는 강원대와의 협의 하에 장학금을 비롯, 법학도서관 등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제주대와 제주지역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로스쿨추진위원회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연 5억 원씩 10년간 로스쿨에 지원하기로 하였고 제주개발공사, 농협, 제주은행도 해마다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범지역 사회적 지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경북에서는 현재까지 로스쿨 유치와 운영을 위한 별다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하루빨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로스쿨 유치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범지역사회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도지사께서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대내외적인 구상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미 『IT·모바일 특구 조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산업단지의 경우 전자산업의 메카로서 삼성과 LG를 비롯하여 다양한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미산업단지의 경우 6월 중 구미공단의 고용현황은 7만4,093명, 2004년1월에 6만8,141명 이후 3년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데다 최고치를 보였던 2005년 10월에 비하면 무려 6,663명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달에 6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구미산업단지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구미지역에 연구소 및 우수한 대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특정한 연구소의 입주 및 대학의 IT 및 모바일관련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혁신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을 창출하고 우수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대덕지구가 특구로 지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덕 특구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개발기술을 사업화로 연계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화를 핵심목표로 선정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 IT·모바일 특구 조성의 경우 빈약한 연구개발 관련 인프라로 인하여 혁신이 창출되기에는 어려운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 IT·모바일 특구 조성의 성공을 위한 핵심목표는 어떠한 방향으로 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향과 현재 추진과제로 선정한 내용들이 잘 연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방인력 확충과 소방서 설치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1월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서 인력충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직의 경우에는 현재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를 위하여 818명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3교대 근무를 위하여 인력충원도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나 지난해 말과 금년 상반기에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들여 신축한 구미 옥계, 경산 자인, 칠곡 가산, 청도 풍각, 봉화 명호 119안전센터가 준공되었으나 현재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 등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께서는 건물을 신축해 놓고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충원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미지역 국가공단은 현재 1단지에 각종 섬유 등 527개 업체, 2단지에 반도체 등 84개 업체, 3단지에 통신기기 등 218개의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옥계, 산동, 장천지역인 제4단지는 LCD관련 173개 업체가 입주될 예정으로 이미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공장들이 입주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상북도 경제의 중심인 구미 국가공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1년3월17일 구미국가공단 내에 코오롱 구미공장 화재시 공장추산 1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올 8월5일에는 경기도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초유의 정전사태로 4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단화재 시에는 많은 재산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구미 국가공단에는 119안전센터 1개소에 인원 11명이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4국가공단의 입주가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소방수요가 한층 증가되어 화재 등 재난 시 초기대응을 위하여 소방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구미국가공단 내의 소방서 설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조병인 교육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및 전국 타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초·중등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교육지원사업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와의 협의가 미진하였다면 이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소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영어마을조성을 위한 타당성 분석이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되어 얼마 전 그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대형 영어마을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에 경기도가 파주 등 대형 영어마을 지원을 위해 경상보조비 220여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영어마을조성 및 운영에 대한 실패사례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이 독자적인 영어마을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타 지역과는 달리 산간·벽지 등 교육 소외지역이 많아 실제 대형영어마을 중심의 교육보다는 소규모 학교단위 영어교육 활성화가 더욱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대형 영어마을 추진보다는 소규모 학교단위 영어교육 지원 또는 폐교를 활용한 권역별 소규모 영어체험학습시설 운용 등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간 협의를 통하여 영어마을조성사업 공동추진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광역 지자체에 두 개의 대규모 영어마을이 운용된다는 것은 대단한 예산낭비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경상북도와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07년 11월 27일(화) 제219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 김영기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청송출신 김영기의원입니다.

청송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김영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해 전부터 세간에는 이태백이라느니, 사오정이라는 말들이 생겨나다가 최근에는 삼태백이라는 말이 새롭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고유가로 인한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유가와 원화강세가 지속된다면 나라 경제 전체가 크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겨우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300만 경북 도민들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기간 당시 김관용 도지사 후보가 외쳤던 구호를 아직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제발 좀 먹고 살자”였습니다. 그 구호에 도지사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냈으며, 아직도 그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공약하신 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와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국내·외를 넘나드는 강행군을 하는 등 도민들의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는 열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정말 부자경북이 될 수 있도록 분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9월, 모 언론과의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국내외 투자 유치 2조 5천억원, 일자리 2만 4,860개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물가와 실업률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만들었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일자리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특정부문에 재정을 투입한다면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 인위적으로 만든 일자리이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고 예산마저 낭비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실적에 치중하여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낮은 임금과 곧바로 없어질 일자리만 만들기 마련입니다.

얼마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실업률 자료에 의하면 도지사께서 취임하신 2006년 7월 전국의 평균 실업률이 3.4%, 우리 경북은 2.3%로 16개 시·도중 강원·전남·경남·충북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내 실업률이 줄어든 현황을 보면, 부산·제주가 0.5%, 서울·대전이 0.4%, 충남 0.3%, 인천·울산·경기·전남이 0.2%씩 각각 감소하였으며, 우리 경북은 충북과 같은 0.1%가 감소하여 16개 시·도중 여섯번째로 적게 줄었습니다.

비록 실업률 추이는 매월 다른 시·도에 비하여 우리 경북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살리기의 효과라기보다는 포항·구미와 같은 대규모 공단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경북의 인구도 작게나마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상반기 경상북도의 인구는 내국인 269만 1,064명과 외국인 2만 5,982명 등 271만 7,046명이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인구는 내국인 268만 2,304명과 외국인 3만 1,687명 등 271만 3,991명입니다.

1년 동안 외국인은 5,705명이 늘었으나 내국인은 오히려 8,760명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 우리 도의 인구는 3,055명이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늘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있을 일자리 창출시책의 전망은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면 실업률이나 취업자 수가 과거에 비해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 실적이 높게 나타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타 시도에 비해 별반의 차이가 없는데다 오히려 우리 도의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인구유입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지금이라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촉진을 통해 확실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쳐나는 부자경북을 만들어 갈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인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북한을 제외한 대한민국 인구는 4,845만 6,000명으로 세계인구 66억 7,000만명의 0.7%, 국가별 순위로는 26위이며, 현재의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25년엔 31위, 2050년엔 44위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우리 도의 합계 출산율은 1.20명으로 전국 평균 1.13명 보다는 높고 16개 시·도 중 8위로 중간수준입니다. 시·군별 출생아수 상위 10개 시·군에는 우리 도의 시·군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위 10개 시·군에 울릉 1위, 영양 2위, 청송 4위, 군위 7위 등 우리 도에서 무려 4개 시·군이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저출산대책 담당을 설치하고 셋째아 이상에게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금 추진 하는 시책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망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서울, 경기와 같이 광역자치단체도 교육에 대해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어진다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데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도의 출산장려 대책에 보육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함께 포함하고, 이를 일자리창출 대책과 연계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최상위법인 「교육기본법」제9조는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해야 할 정책을 나열하고, 학교를 지역적 또는 종별적으로 공평하게 배치할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교육청 관내 23개 지역교육청별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제력, 재정자립도, 재정력,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등에 따라 커다란 교육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간의 교육격차는 교육정책이 추구해야 할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며 지역 주민들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지역발전에도 매우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지역간 경제력의 차이가 심하다면 교육당국은 이 점을 감안하여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 명시한대로 교육재정을 배분하고, 교육시설의 설치와 우수교사를 배치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도내 영재교육기관 현황에 대해서 확인한 바로는 현재 수학 영역 271개, 과학영역 30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내 23개 지역교육청 초등과정에서 수학과 과학 영역 중 어느 한곳도 없는 곳은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예천, 봉화, 울릉군이며, 중등과정에서 수학과 과학 영역 중 어느 한 곳도 없는 곳은 청송, 영양, 영덕, 고령, 예천, 봉화, 울릉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에서 수학과 과학 영역 어느 한 개도 영재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아이들 교육에 대해 자신감마저 잃은 실정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로 오기 전, 가난과 시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자식들 공부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살아 갈 수 있었습

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희망이라는 말이 가장 가슴으로 와닿는 것은 자식들이 좋은 여건에서 열심히 공부 잘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영재교육관을 설치해 준다면 이들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커다란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학생들도 타 지역과 비교해도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학습부진 학생이 보강학습을 통해 구제받는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릉, 청송, 영양, 군위군 지역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지역은 영재교육기관이 초등과 중등과정에 한 과정도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이들 지역을 포함하여 지역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부서간 중복되는 지원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의 2007년도 예산편성은 같은 사업에 대해 중복투자 부분은 학생상담자원봉사연합회, 경북교육총연합,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경북협의회 등 18개 단체 동일사업에 대해서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와 총무과에서 반복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특정단체에 이중으로 투자하는 대신에 다른 단체를 추가선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급한 사업을 지원하든지 차라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감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농산·어촌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4년 교육부는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농산·어촌지역 1군 1개 우수고 육성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4년동안 총 86개교에 1,289억원을 지원하여 한 학교당 평균 약 15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비 명목 목적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을 지원하여 학업수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인데도 각종 공사비 등 대부분 학교시설사업에만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수인재의 도시유출을 막고 농산·어촌지역에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어촌지역 학교지원비 일정액은 반드시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야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북교육청 관내 사립학교의 경우 인사위원회는 100%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사립학교의 4분의 1이 인사위원회 규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는 사립학교에서도 반드시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규정은 신규교사를 채용하고 파면, 해임, 직위해제, 징계의결. 승진, 교감임명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심의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립교의 4분의 1이 인사위원회 규정을 갖추지 않은 채 학교를 운영해 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장이나 이사장에 의해 전횡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교원인사위원회의 공정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 규정을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교원임명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경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잘살고 행복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경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종원 의원(농수산위원회) ◎

존경하는 안순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밤낮 없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

성을 위한 시책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조병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주출신 농수산위원회 이종원의원입니다.

오늘 제219회 정례회 기간 중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무한히 감사를 드리며, 이 기회에 몇 가지 도정현안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추가질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동안 도정질문이나 신문지상에 여러 번 언급된 바 있는 도시가스와 관련한 연료정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피력코자 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통, 의료복지 등 사회전반에 걸쳐 생활이 편리한 도시지역의 연료는 도시가스라는 아주 야릇한 이름으로 값이 싼 LNG 가스를 공급하는 반면, 도시가스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대부분 시·군지역의 국민들은 농촌에 사는 것도 한스러운데 도시와 농촌의 연료정책에서까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 국가와 정치권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와 공기업에서 관장하는 국가의 에너지정책이 도시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평등권 차원에서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와 관련한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로써 LPG 가스를 사용하는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여건이 모든 면에서 좋은 도시 지역에 공급되는 LNG 가격은 1㎥당 805원인데 비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우리 13개 시·군과 시 외곽지역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는 1㎥당 1,205원으로 LNG 가스에 비해 33%나 비싼 4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가구당 사용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월 100㎥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어렵게 살아가는 중소도시나 농촌지역민들이 연간 48만원의 연료비를 더 지출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연료정책의 현실인 것입니다.

도시가스를 전면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라면, 차후에 단계적으로 배관을 설치해서 점차 해소시키겠다는 말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합리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불평등한 연료정책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계층들에 대한 원성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LNG와 LPG 가격의 차액인 1㎥당 400원을 LPG 사용자에게 보조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또 하나의 방법으로써는 LNG와 LPG가격의 평균가격인 1,005원을 가스 공급가격으로 정하여, LNG 가격은 200원을 올리고 LPG 가격은 200원을 내려 동일한 가격으로 맞추어 주는 것이 이 문제의 해소책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오지에 살고 있는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농어촌이나 비도시권 주민들도 도시민들과 함께 평등한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배관망 설치에 관한 사항 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에서는 금년을 경북방문의해로 정하여 많은 홍보와 이벤트를 하고, 이로 인해 우리 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만 10월말까지 6,600여만 명에 이르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가 가진 문화유산에 대한 지사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끈질긴 의지와 노력의 결실로서 지역을 알리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많이 이바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외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웅장한 유적지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붐비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문화유적이나 관광지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유럽, 중국, 중남미 등 역사적 유산과 광활한 자연경관을 지닌 나라들은 그것만으로도 많은 국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인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앞서가는 관광국가들도 테마파크나 세계적인 리조트 건설, 카지노, 골프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관광 상품화 마케팅에 힘을 쏟음으로써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 간 관광객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우리 도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으로 알려진 경주의 불국사, 석굴암, 천마총 등 도내 각처의 불교, 유교문화 유적들도 유럽의 대성당, 박물관, 성 등과 비교해 볼 때 그 규모가 너무나 작아 그 볼거리만으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고 생각되므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7을 맞이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연계해 가며 경북 방문의 해를 추진했지만 과연 외국인 관광객은 얼마나 늘어났으며, 내국인과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질적으로도 만족 할만한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 관광 선진국들과 비교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제관광객들의 관광 패턴은 정적인 볼거리 관광에서 볼거리를 겸한 체험이나 참여 형태의 동적인 관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안동의 하회별신굿 탈놀이는 안동의 유교적 지역성과 연계한 테마관광 상품으로 중국의 경극, 일본의 가부끼 등과 더불어 동방 특유의 전통 희극으로 외국의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관광 상품의 내용과 질이 앞으로 관광의 목적이 되고 관광객 유치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볼 때 상대적으로 좁은 땅덩어리에 볼거리가 적은 우리로서는 전통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체험과 참여를 주된 관광요소로 인식하고 유형문화재 관광과 더불어 함께 상품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27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 관광 상품화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얼마나 되며, 그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활용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최근에 사찰체험을 통하여 전통 기 수련 및 명상체험 등이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는 한국 특유의 전통 사찰이 곳곳에 있으므로 전통을 살린 특색 있는 사찰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경북 특유의 관광자원 개발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력의 차이가 빈부차와 비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20% 가정과 하위 20%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무려 5.7배에 이르며, 매년 사교육비 증가율은 약 12%에 이르고 있어 빈부차에 따른 학력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교육제도의 개선과 선생님들의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이 어려워 학업에 열중할 수 없는 학생들,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 이들도 미래에 대한민국의 동량이 될 재목들임을 다 함께 인식하여야 하며, 이들을 보듬어 주는 곳이 공교육기관인 학교뿐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결손가정이나 가난 등의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기도 힘든데 교육기회 마저 균등치 못한 이 사회의 교육여건에 대한 이들의 불만과 마음의 상처는 학교교육의 제도개선과 선생님들의 관심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 말이나 이러한 내용의 기사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고 꼭 문제를 해소시켜야만 된다고 본의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내 특별지도로 바로잡아 갈 때 고학년에 이르러서는 성적부진 학생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학교교육 또한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각 학교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등한 교육 기회만으로도 충분한 수학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내 특별 학습대책이 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교육청은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학생선수의 기본 인권 보호 및 시·도간 과열경쟁 방지를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인적자원부는 매년 학교체육 · 보건 · 급식 기본방향이란 지침을 통하여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종 경기대회는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수업이 없는 날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선수들은 대회출전과 오전수업 등으로 인한 성적 저하 및 결손된 수업보충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초·중·고 시절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학교수업을 도외시한 채 운동에만 집중, 진학에 급급하다보니 중학생 선수의 76%, 고등학교 1학년 선수의 98%가 학년석차 하위 20%에 속하는 등 학력수준이 낮아 향후 사회적응에 심각한 장애마저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점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학생 선수들의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보장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강력한 시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2월말부터 2007년8월31일 사이에 각종 체육대회의 66.7%가 평일에만 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일 및 방학에 열린 체육대회는 불과 16.7%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가까운 대구교육청의 경우는 모든 체육대회를 평일이 아닌 휴일과 방학 때만 연 것으로 나타나 우리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학교체육의 대표적 상징인 학교 운동부가 대부분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으며, 실적위주로만 특기자전형이 실시되는 등의 기준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이 수업은 거의 전폐하고 운동에만 전념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학생들이 전국대회 입상실적을 올리기는 쉽지 않아 결국 학생들이 졸업하고 운동을 그만두면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과 향후 체육대회 개최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질문 >

○ 지사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더 경제과학진흥본부장님께 추가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 본부장님

○ 만일 말이죠, 대구시청 공무원하고 경상북도청 공무원하고, 경상북도청 공무원들이 이 도시가스처럼 33%나 대구시청공무원들보다 봉급을 적게 받는다고 하면 정부가 시정해 줄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아니요, 성격은 다릅니다만 그러나 국민은 도시에 사는 도시민하고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는 농촌지역의 비도시권에 있는 국민들하고는 같은 국민들이거든요. 그 심정 어떻겠습니까?

만일 33%나 대구시청보다 적게 받는 경상북도청 공무원의 입장이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 아니 그 사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저도 시간이 없거든요.

○ 그래서요, 제가 물은 답이 배관망 설치 외에 우리 경상북도가 정부나, 사실이 문제가 국회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리 경상북도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이 도시가스 문제를 대응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배관망 설치를 건의만 중앙에 했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 예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그걸 물었는데 그 답변은 전혀 없거든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 그건 압니다.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제 질문시간을 자꾸 뺐지 마시고요. 어떻게 정부에다 촉구를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공기업이지 그게 왜 민간기업이에요?

○ 정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걸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배관망 외에 어떠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느냐 그 내용을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물을 게 많아요, 시간만 자꾸...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경상북도에서 배관망 설

치 외에 어떠한 시정요구를 했느냐 그걸 말씀해 주세요.
○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기름이나 연탄이나 나무를 떼는 이런 연료들은 우리 국민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 이거는 전혀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 농촌에는 그냥 LPG 가스만 써야 됩니다. 그러면 농촌에도 도시가스 천연가스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LPG를 쓰는 농가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으니까...
○ 그런데 지금 공기업하고 정부에서 잘 살고 모든 생활이 편리한 도시에는 싼 연료를 대주고 살지 못하고 모든 여건이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너희들은 LPG만 써라, 이게 국가의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 평등권에...
○ 어긋나죠?
○ 그러니까 배관망만 설치해 달라 하지 말고, 안 될 것... 배관망 설치는 제가 봐서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대구시청하고 경상북도청이 봉급이 차이가 나면 정부가 시정해 줄 때까지 가만 기다리겠느냐는 이 얘깁니다.
○ 그래서 저는 배관망만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르고 한 세월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산간 오지에 있는 한 집, 두 집 보고 배관망이 다 못 들어갈 것이고요.
○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연료정책은, 가스에 대한 연료정책은 동일자격으로 해 줘야지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평등한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제가 방안은 가스 값을 LNG 값은 올리고 LPG 값은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값을 똑같은 가격을 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니가 도시가스 쓰려면 도시가스 쓰고 LPG가스 쓰려면 LPG가스 쓰고, 이래야지, 그러면 산간 오지에 한 두 집이 있는 거기에도 배관망이 된답니까? 거긴 안 되겠죠? 아무래도...
○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면지역까지는 갈 수 있지만 한 두 집 있는데 까지는 못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 그러면 그런 국민들한테도 어차피 가스는 똑같기 때문에 가스에 대한 것은

LPG 천연가스 수준으로 LNG 값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LPG 값은 더 올리고 LNG 값은 내려가지고 가스는 똑같은 개념의 국가연료정책에서 맞춰줘야지 국민의 평등권에 부합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 일리만 있다고 하면 참 큰일났네.

○ 아니 그래서 저는 애초에 질문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정부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게 시정되도록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진짜 서글픈 현실이고요, 제가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진짜 이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해서 조금 전에 제가 흥분한 것처럼 주민들한테도 합니다만 그 타결책이 없으니까, 서러움은 서러움대로 계속 우리가 받아가야 되는데요. 이런 국민 평등권 차원에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그래서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사실 이런 부분에 좀 해 주셨으면 제가 보충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다시 드렸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은 이 한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 농촌 중소도시에 사는 모든 우리 국민들의 아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도정도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 다음에 운동부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 제가 물은 것은 2006년8월까지 우리 경상북도에는 평일에는 체육행사를 안 했습니까?

○ 그래서 저는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2세 교육문제는 정말 없는 사람들, 없는 것도 서러운데 아이들까지 세습적으로 공부에 차등적인 세습을 시켜서는, 이거는 정말로 우리 교육기관에서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 이제는 앞으로 특히 영어교육은 더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있으니까 과외 선생님들을 집에 갖다 교육시키면 다 되는데, 없으니까 과외시킬 형편이 안 되고 하니까 없는 집 아이들은 부모의 세습에 의해서 공부도 못하고, 이런 현실을 우리 공교육에서 바로 잡아줘야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환으로서 이 체육대회 이걸 평일에 해서 아이들 학습부

진까지 오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대회 입상하면 되는데 대회 입상도 못하면 완전히 진짜, 심지어 한글로 자기 이름도 못쓰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정말로 이거 쇼크였습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 평일에 하는 횟수가 많은데, 이거는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예, 서면으로... 횟수하고, 그 학교에서 어떤 사유서를 받게 되어 있죠?
○ 그 사유서 내용하고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공교육에서 2세 교육에 차별성이 없는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는 그 기초를 정말 마련해 주십사 하는 데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천 의원(통상문화위원회) ◎

존경하는 안순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영주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김종천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219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생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인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의원의 지역구인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지난 5월 MOU체결후 착공하기까지 개발촉진지구 변경 등 모든 절차가 통상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던 것을 건설교통부 설득과 ONE-STOP 민원처리로 3개월 내에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지난 9월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영주시를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에서 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경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고 이를 바탕으로 나부터 먼저 스스로 변화할 때 진정한 공직사회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며 경쟁력의 토양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실천적인 혁신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의 장기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의 국비지원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2조 456억원, 2007년도에는 2조 2,930억원 규모인 반면에 전남도의 경우 2006년에 2조 4,916억원 2007년에는 2조 7,057억원으로 이를 인구수 1인당 투자액으로 환산하면 2007년의 경우 경북인구는 263만여 명으로 1인당 87만원인데 비하여 전남은 총인구 180만여 명으로 이는 1인당 150만원이며, 약 두 배 차이로 우리 도가 중앙정부로부터 개발예산에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남도는 오늘 새벽 결정된 2011년도 여수엑스포 유치로 앞으로 엄청난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을 가지고 비교하여도 차이가 크지만 특별교부세 등 정치적 사안에 따른 정책적인 예산지원 등을 비교한다면 엄청난 지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역차별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국토균형개발 차원의 장기발전 프로젝트를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성론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북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조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즉,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은 국가시행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정부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합니다.

기획예산처의 금년도 국감자료에 나타난 최근 3년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경북은 2004년도에 포항 영일 신항만 배후도로, 포항~기계간 국도확장, 안동~영덕간 고속도로건설 등 3건, 2005년도에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 연장, 경북 중부권 광역 상수도 등 2건, 2006년도에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진입로 및 종합유통단지 진입로, 안동 북부지구 중규모 용수개발, 포항 흥해 우회도로 등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올해 경북도는 자체 발굴한 장기정책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향후 10년간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정책적 사업이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에 오른 경우도 없습니다.

이처럼 예비타당성 조사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 정책전략 수립에 집행부가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과 관련된 예비 타당성조사 건수가 30여 건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도 자체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없다는 것은 우리 경북도의 장기발전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향후 우리 경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경상북도 북부권 발전을 위한 개발전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하고자 합니다.

비슷한 낙후지역이었던 전남 서남권은 대규모 국책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전북의 무주, 진안, 장수 등 소위 무진장 권역도 태권도공원 등 국책 프로젝트로 개발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북도가 강력한 지역개발 의지를 갖고 장기발전 비전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노력을 기울인데다 정치권의 지원이 시너지 효과로 얻어진 성과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 경북도는 북부지역에 대한 자체적인 발전계획 마련보다는 정부의 개발프로젝트에만 의존하고 있어 북부지역민들의 상실감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12월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겠다던 경북도의 사업 중에서 북부권과 관련된 사업은 중앙선 복선전철화,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봉화~울진간 36번 국도건설 등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사업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굳이 대선 공약사업이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북부권 지방자치단체들과 머리를 맞대어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국가정책으로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둘째, 지역개발세 반환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시장과 울진군수를 상대로 낸 지역개발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지역개발세법이 지난해 1월 1일 개정되었지만 지방세징수의 근거가 되는 경상북도세조례가 3월 16일에 개정되어 이전에 부과된 세금은 위법하므로 양 자치단체는 한수원이 지난 해 납부한 지역개발세 166억원 중 77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보전을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북도가 세액의 35%,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65%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주재원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세원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조금만 더 서둘렀거나 아니면 개정당시 세금 부과시기를 명확히 하는 부칙만 넣었더라도 반환이라는 사태로 발전되지는 않았으리라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바라며,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진행 중인 도내 지방도 확포장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지방도 확포장 계속 사업은 모두 6건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대부분이 매년 총 사업비의 극히 일부분만 투자됨으로써 오히려 예산낭비를 초래하여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주의 경우 실례로 풍기에서 순흥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총 사업비가 421억원인데 2007년도에 2억원이 투입되었고 2008 예산안에는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한다면 앞으로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며 그 사이에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할 때, 총 공사금액은 몇 배가 늘어난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선심성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투자로 단기간에 마무리함으로써 예산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도민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아동의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장애인 교육예산을 살펴보면 2005년도 총예산액 2조 650억 1,4004만원 중에서 408억 244만 6,000원으로 1.98% 이었으나 2007년에 총 예산액 2조 1,694억 8,555만원 중에서 672억 5,744만 7,000원으로 3.1%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율은 2005년도 전국평균 2.4% 그리고 2007년 전국평균 3.26% 보다 밑도는 것으로 경북교육청의 장애인 특수교육 분야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체학생수 42만 5천 775명중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0.84%인 3천 572명으로서 전국평균 0.8%를 웃돌고 있는 실정인데도 학교 과정별로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의 설치비율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체 1,693개교 중에서 306개교로 18.1%에 지나지 않으며, 유치원의 경우에는 설치비율이 0.3%로 전국에서 단연 꼴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 설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을 보면 69.7%에 지나지 않는 등 현재 경북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육지원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장애인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으로 바뀌고 특수학급당 학생 배정수가 현행보다 낮추어져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경우 필요한 특수 학급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20건

● 승인안 : 2건

● 예산안 : 4건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건

【조례·규칙안 : 20건】

□ 조례안 ·····

○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등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조례안
○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경상북도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농림어업·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나 도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4조(기금의 조성) ①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기금의 재원은 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와 도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기타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도지사가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3. 기타 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새경북기획단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지원사무 담당사무관

제8조(보고 및 환수)

①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 지출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①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하여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남북교류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3. 도의회 의원
4. 도 관계공무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의 남북교류협력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①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 ①제9조제1항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문화, 체육, 학술, 농림어업, 경제 등의 교류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양 지역의 경제발전과 번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대구경북 경제통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의 책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각 지역이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국비 확보 등 대외적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제3조(지역 균형발전 도모)

경제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하여 시·도 지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제4조(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의 설치)

도는 시와 공동으로 경제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경제통합 비전 제시 및 각종계획·정책 심의
2. 시·도 공동 경제발전 전략 심의
3. 시·도 제안 경제발전시책 검토 및 공동협력사업 발굴·심의
4. 시·도 경제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 등 통합지원 제도 심의
5.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의 심의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실·본부·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되, 사안별로 위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도 의회, 경제단체, 지역의 대학교, 시민단체, 지역혁신협의회 등 각급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하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인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 중 1인은 기획조정본부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심의 안건 및 사전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위원 등의 임기)

①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소속기관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시장과 협의하여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1년 이상 장기 출타를 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때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연 1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는 대구경북경제통합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도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등의 회의 준비
2. 위원회 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
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공동추진과제의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위원회 등의 제반업무 지원

⑤ 도지사는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안건을 협의하고,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시민 등의 제안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3조(합의 안건의 효력)

위원회에서 합의된 안건은 그 취지를 존중하여 시·도간의 협약 체결 등 그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기관의 참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는 관계공무원·기관·단체 및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 분담)

사무국에서 수행하는 조사·연구 및 공동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시·도가 분담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촉위원, 관계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2월 21일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01조 내지 제106조”를 “제112조 내지 제115조”로 한다.

제5조중 “문화체육관광국”을 “관광산업진흥본부(한시기구)·문화체육국”으로 한다.

제6조제10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제11호 내지 제19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균형발전 추진

제7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지도

7. 투자입지개발 기본구상 및 입지지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관광산업진흥본부) 관광산업진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업무종합기획 및 조정
2. 관광산업의 지도·육성
3. 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사무

4.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
5. 향토축제 개발 및 관광자원화
6. 국내·국제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무
7. 문화엑스포 지원
8. 기타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9조의2(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2. 문화산업의 육성
3. 출판사·인쇄소 등록에 관한 사무
4. 전문체육·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지원
5.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6.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무형문화재 발굴
7. 문화재 지정·해제 및 보호구역 지정
8. 전통문화개발에 관한 사항
9. 기타 문화·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10조제6호 내지 제27호를 각각 제7호 내지 제28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관련 농·수·축산 대책에 관한 사항

제14조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동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업무의 총괄·조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을 “경제과학진흥본부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경제관련 실·국장”을 “경제관련 본부장·국장”으로 한다.

제5조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기획팀장”으로 한다.

②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경제과학진흥본부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기획팀장”으로 한다.

③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④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⑤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⑥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정보통신팀장”을 “정보화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⑦경상북도특산품디자인및포장개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관광산업진흥본부장”으로 한다.

제24조중 “관광과장”을 “관광산업팀장”으로 하고, “담당계장”을 “관광상품개발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위생관리담당”을 “식품안전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호중 “보건업무담당국장”을 “식품안전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위생관리업무담당”을 “식품안전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⑨경상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인적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재난업무담당”을 “인적재난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⑩경상북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제1항중 “정책기획관실”을 각각 “혁신법무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7조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혁신법무팀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1조 내지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12조 내지 제115조 …… …… …… …… …… …… …….
제5조(본부·국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본부·경제과학진흥본부·투자통상본부(여유기구)·문화체육관광국·농수산국·환경해양산림국·보건복지여성국·건설도시방재국·행정지원국·소방본부를 둔다.	제5조(본부·국의 설치) …… …… …… 관광산업진흥본부(한시기구)·문화체육국…… …….
제6조(기획조정본부) (생략) 1~9. (생략) <신설> 10~18. (생략)	제6조(기획조정본부)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균형발전 추진 11~19. (현행 제10호 내지 제18호와 같음)
제7조(경제과학진흥본부) (생략) 1~6. (생략) 7. 균형발전 추진 8~29. (생략)	제7조(경제과학진흥본부)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삭제> 8~29.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02조”를 “제112조”로 한다.

제2조중 “4,133명”을 “4,162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883명”을 “1,912명”으로 한다.

별표2의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 급	6 급	7 급	8·9급
비율	6%이내	20%이내	**34%이내**	35%이내	**5%이상**

3. 기능직공무원

구 분	6 급	7 급	8 급	9 급	10 급
비율	5%이내	**13%이내**	**19%이내**	32%이내	**31%이상**

“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12조 …… …… …… …… ……..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133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883명 2~4.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4,162명……, …… …….. 1. …… : 1,912명 2~4. (현행과 같음)

[별표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 계		4,162	1,197	98	2,472	395
정 무 직		1	1			
일반직	소 계	1,374	988	55	78	253
	2~3급	1		1		
	3 급	9	8		1	
	3~4급	1	1			
	4 급	69	49	7	5	8
	5 급	271	220	8	16	27
	6 급	468	338	19	27	84
	7 급	474	332	20	23	99
	8 급	81	40		6	35
별정직	소 계	45	29	10	4	2
	1급상당	1	1			
	3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10	4	5	1	
	6급상당	16	11	2	2	1
	7급상당	7	6		1	
	8급상당	7	5	1		1
연구직	소 계	198	3		164	31
	연구관	27			26	1
	연구사	171	3		138	30
지도직	소 계	28			28	
	지도관	7			7	
	지도사	21			21	
소방직	소 계	2,108	51		2,057	
	소방정	17	2		15	
	소방령	47	9		38	
	소방경	84	7		77	
	소방위	151	11		140	
	소방장	285	12		273	
	소방교	587	9		578	
	소방사	937	1		936	
기능직	소 계	364	125	33	97	109
	6 급	18	10	2	3	3
	7 급	45	26	4	7	8
	8 급	67	19	7	18	23
	9 급	114	34	4	35	41
	10 급	120	36	16	34	34
교원	소 계	44			44	
	학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1			11	

[별표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기관별	정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합 계	30	일반직 : 3급1, 4급3, 5급8, 6급9, 7급8 기능직 : 10급1		
관광산업진흥본부	1	일반직 : 3급1	2010. 10. 31	관광산업진흥본부장
혁신법무팀	14	일반직 : 4급1, 5급4, 6급5, 7급4	2008. 6. 30	
공공기관이전지원팀	10	일반직 : 4급1, 5급3, 6급3, 7급3	2008. 10. 30	
FTA농축산대책과	1	일반직 : 4급1	2010. 12. 31	FTA농축산대책과장
회 계 과	4	일반직 : 5급1, 6급1, 7급1 기능직 : 10급1	2008. 12. 31	복식부기업무

경상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괄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한다.

경상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을 각각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으로 한다.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한다.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경상북도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11”을 “「지방자치법」제149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로 한다.

경상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으로 한다.

경상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제110조 제2항”으로 한다.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한다.

경상북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한다.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등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을 “「지방자치법」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2조1항제2호중 “영 제15조” 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하단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지방자치법」제34조”로 한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지방자치법」제54조” 를 “「지방자치법」제62조”로 한다.

경상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윌 수 있는 조례” 를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로 한다.

제2조제4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한다.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를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9조의2” 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하고, “법 제108조 및 제111조”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로 하며, 동조 동항제3호중 “법 제112조” 를 “법 제121조”로 하고, 동조동항 제4호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법 제95조제2항”을 “법 제104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법 제36조 제3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중 “법 제36조 제5항”을 “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경상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경상북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8조·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44조·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제4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제64조”로 한다.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을 “「지방자치법」제3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 (제6조 제1항관련)

구분	업종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사업장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의 총면적	1천이상	400이상	100이상(인구50만이상도시는70이상)	300이상
시설 및 장비	1.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2.체인부록(1톤이상)				○
	3.도장작업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4.부동액회수재생기	○	○	○	○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	1.제동시험기	○	○		
	2.전조등시험기	○	○		
	3.사이드슬립측정기	○	○		
	4.속도계시험기	○	○		
	5.일산화탄소측정기	○	○	○	○
	6.탄화수소측정기	○	○	○	○
	7.매연측정기	○	○	○	○
시험기 및 측정기	1.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2.노즐시험기				○
	3.압력측정기	○	○		○
	4.회전반경측정기	○	○	○	
	5.휠밸런스	○	○	○	
	6.토인측정기	○	○	○	
	7.캠버캐스터측정기	○	○	○	
	8.전자식엔진종합시험기				○
	9.휠얼라이먼트			○	
공작기계	1.실린더보링머신				○
	2.실린더호우닝머신				○
	3.밸브시트그라인더				○
	4.밸브시트카트				○
	5.크랭크연마기				○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단, 부분정비업의 경우 시험기 및 측정기 4,6,7번의 3종 또는 9번중 선택 가능)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 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 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부분정비업자(기존 등록된 부분정비업자 포함)는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 정기, 회전반경 측정기 또는 이 3종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통상 휠얼라이먼트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하며, 전조등 시험기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조등을 정비할 수 있다.
8. 부분정비업자는 LPG자동차의 LPG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경상북도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도지사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도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기타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상북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상북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제3조(부담기준 협의) 경상북도는 제2조 규정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경상북도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상북도(이라 "도"라 한다)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
2. 도와 시·군 상호간 교육훈련에 관한 조정·협조사항
3. 국가의 정책 추진상 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교육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도 교육훈련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 교육훈련담당과장이 된다.

③당연직위원은 시·군의 공무원 교육훈련업무 담당국(과)장,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 공무원교육훈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중 〃3년〃을 각각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를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은″을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으로 한다.

제16조제3호중 ″최초 시행인가일″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 한다.

제17조제2호중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부동산″을 각각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로 하고, ″민간출자분(출연분을 포함한다)″을 ″민간출자분 및 민간출연분″으로 하며, ″법인등기″를 ″법인등기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로 한다.

제32조 내지 제37조를 각각 제34조 내지 제39조로 하고,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

하는 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단, 사업개시일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 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 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면제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750을 경감
3.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625를 경감

②제1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경상북도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생략)	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 ③ (현행과 같음)	○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징기간을 단축함.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생략)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 ③ (현행과 같음)	○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징기간을 단축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②(생 략)	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②(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세제를 지원함.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도서관법」으로 법명 변경('06.10.4)
<신설>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일반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사항을「감면조례」로 이관하여 규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4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08.1.1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을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을 부양하는 있는 자로 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16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생 략) 2. (생 략)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6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최초시행인가일 이전에 투기목적의 소유권 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원주민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게 감면대상 판단 시점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 조정.
제17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제17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생 략)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 1. (현행과 같음) 2.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최초 고시일 이전에 투기목적의 소유권 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원주민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게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 조정.
제1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전	제1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 1.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도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

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③ (생 략)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출연분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민간출자분 및 민간출연분..... ....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지하철공사가 노선을 확장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지하공간에 대한 사용권(구분지상권)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감면대상에 추가.

<신설>	제32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단, 사업개시일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	○ 기업도시의 개발목적이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있으므로 산업단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에 추가.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33조(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 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부터 2년 이내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

	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면제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750을 경감 3.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625를 경감 ② 제1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경상북도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34조(사무처리의 위임).....	○제32조 및 제33조의 신설에 따른 조항변경.
제33조(감면신청) ① (생략) ② (생략)	제35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를	제36조(감면자료의 제출).....	

감면 받은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5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지방세법」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지방세법」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제3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중복감면의 배제).....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시행규칙).....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회계에 관한 증명란 중 (9) 및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9)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	1건	5,000
(10)공유재산의 대부(연장)신청	1건	3,000

별표 2의 1. 일반행정관계란 중 (1)을 삭제한다.

별표 2의 5. 보건사회위생관계란 중 (3)내지(5)를 다음과 같이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3)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
(4)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
(5)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허가사항의 변경	1건	40,000

별표 2의 5. 보건사회위생관계란 중 (8)을 삭제한다

별표 2의 9. 체육시설업관계란 중 (3) 및 (가)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요 액	구 분	기준	요액
2. 회계에 관한 증명 (1)~(8) (생 략) <신 설> <신 설>	(생 략)	(생 략)	2. 회계에 관한 증명 (1)~(8) (현행과 같음) (9)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 (10)공유재산의 대부(연장)신청	(현행과 같음) 1건 1건	(현행과 같음) 5,000 3,000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2), (3) (생 략)	 1건 (생 략)	 신규 500 계속 300 (생 략)	9. 일반행정관계 <삭 제> (2),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5. 보건사회위생관계 (1), (2) (생 략) (3)종합병원 개설허가 (4)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5)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허가사항의 변경 (6), (7) (생 략) (8)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생 략) 1건 1건 1건 (생 략) 1건	 (생 략) 70,000 50,000 30,000 (생 략) 신규2,300 재교부2,000	5. 보건사회위생관계 (1), (2) (현행과 같음) (3)종합병원 개설허가 (4)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5)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허가사항의 변경 (6), (7)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1건 1건 1건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100,000 100,000 40,000 (현행과 같음) <삭 제>
9. 체육시설업 관계 (1), (2) (생 략) (3) 신고체육시설업 (가)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생 략) 1건	(생 략) 5,000	9. 체육시설업 관계 (1), (2) (현행과 같음) (3) 신고체육시설업 <삭 제>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삭 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2조중 “영 제35조”를 “동법 시행령 제19조”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9조 본문중 “영 제27조제8항”을 “영 제42조”로 한다

제40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4호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로, “분할매각할 수 있다.”를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

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64조제1항 본문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2호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29조 < 삭 제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신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동법시행령 제19조…… 1. ~ 3. (현행과 같음)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 4. (생략)	……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생략)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 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4월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1. < 삭 제 > 2. ~ 3. (현행과 같음) 4. …… …… …… …… …… …… ……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건물바닥면전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 삭 제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 나. (생략)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 3,000만원 …… 1. …… 600만원 …… 가. ~ 나. (현행과 같음) 2. …… 300만원 ……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제20조의 2(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결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결정) ①시장·군수는 「경상 북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별표3 및 별표4의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따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팔공산도립공원은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를 별표3 및 별표4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액결정) 시장·군수는 별표3 및 별표4에서 정한 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결정)** ①시장·군수는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별표3 및 별표4의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따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팔공산도립공원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별표3 및 별표4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본문 중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제30조부터 제34조 까지”로 하고, “제7조 및 제12조”를 “제6조의2부터 제12조 까지”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별표 2〕의 경상북도립성주공공도서관의 위치란 중 “경산리 660”을 “예산리 612”로 하고, 경상북도립 영양공공도서관의 위치란 중 “372-1”을 “540”으로하고, 경상북도립 울릉공공도서관의 위치란 중 “도리 175-1”을 “저동리 440”으로 하고, 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의 위치란 중 “가흥동 2-15”를 “가흥1동 2-69”로 하고, 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풍기분관의 위치란 중 “성내리 142-1”을 “성내4리 142-3”으로 하고, 경상북도립청송공공도서관의 위치란 중 “월막리 437-2”을 “월막2리 438-1”로 하며, 경상북도립봉화공공도서관의 위치란 중 “포저리”를 “내성리”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별표 3〕의 경상북도상주학생야영장의 위치란 중 “산 46-3”을 “562”로 하고, 경상북도군위학생야영장의 위치란 중 “산 77”을 “97-1”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8조의 본문 중 “법 제34조”를 각각 “법 제32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의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제29조제4항의 본문 중 “〔별표 2〕”를 “별표 2”로 하며, 제30조제4항의 본문 중 “〔별표 3〕”을 “별표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1 장 총 칙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 ----------제6조의2부터 제12조까지---------- ---------- ---------- ----------.

【별표 2】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경상북도립 성주공공도서관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660
경상북도립 영양공공도서관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372-1
경상북도립 울릉공공도서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리 175-1
경상북도립 영주공공도서관	경북 영주시 가흥동 2-15
경상북도립 영주공공도서관풍기분관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142-1
경상북도립 청송공공도서관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437-2
경상북도립 봉화공공도서관	경북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194-4

【별표 3】 학생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경상북도상주학생야영장	경북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산46-3
경상북도군위학생야영장	경북 군위군 소보면 사라리 산77

【별표 2】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경상북도립 성주공공도서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612
경상북도립 영양공공도서관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540
경상북도립 울릉공공도서관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440
경상북도립 영주공공도서관	경북 영주시 가흥1동 2-69
경상북도립 영주공공도서관 풍기분관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4리 142-3
경상북도립 청송공공도서관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2리 438-1
경상북도립 봉화공공도서관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194-4

【별표 3】 학생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경상북도상주학생야영장	경북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562
경상북도군위학생야영장	경북 군위군 소보면 사라리 97-1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별표 1]의 전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경주초등학교화천분교장병설유치원, 금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 농소초등학교봉곡분교장병설유치원, 해평초등학교일선분교장병설유치원, 순흥초등학교배점분교장병설유치원, 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고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이두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개진초등학교영동분교장병설유치원, 다산초등학교벌지분교장병설유치원 및 예천동부초등학교보문분교장병설유치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대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포항해맞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포항해맞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항시 북구 환호동 442

나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금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명 칭	위 치
금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339

모아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김천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김천유치원	김천시 삼락동 328

상모유치원의 위치란 중 “1”을 “41”로, 구미신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 중 “113-2”를 “99-3”으로, 대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 중 “산18-1”을 “880”으로 한다.

[별표 2]의 죽장초등학교죽북분교장, 대방초등학교, 농소초등학교봉곡분교장, 북후초등학교연곡분교장, 해평초등학교일선분교장, 순흥초등학교배점분교장, 창산초등학교, 영순초등학교영창분교장, 신상초등학교, 고로초등학교, 이두초등학교비안분교장, 칠곡초등학교, 직동초등학교, 개진초등학교영동분교장, 다산초등학교벌지분교장, 예천동부초등학교보문분교장, 예천남부초등학교신당분교장, 은풍초등학교은계분교장 및 감천초등학교옥천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대이초등학교란 다음에 포항해맞이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명 칭	위 치
포항해맞이초등학교	포항시 북구 환호동 442

나원초등학교란 다음에 금장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명 칭	위 치
금장초등학교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339

진평초등학교란 다음에 구미봉곡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구미봉곡초등학교	구미시 봉곡동 190

부림초등학교란 다음에 봉황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명 칭	위 치
봉황초등학교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81-14

명칭란 중 “태하초등학교”를 “남양초등학교태하분교장”으로, 효자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43”을 “효자토지구획정리지구 59블럭 1롯트”로, 상모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1”을 “41”로, 금오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503”을 “504”로, 구미신평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113-2”를 “99-3”으로, 대교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산18-1”을 “880”으로 한다.

[별표 3]의 중동중학교란을 삭제하고,
양북중학교란 다음에 화랑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화랑중학교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191

오태중학교란 다음에 광평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명 칭	위 치
광평중학교	구미시 광평동 산63-3

금오중학교의 위치란 중 “임오동 127-2”를 “임은동 128”로, 산동중학교의 위치란 중 “934”를 “933”으로 한다.

[별표 4]의 영주부석고등학교, 비안고등학교 및 매화종합고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하고, “죽변종합고등학교”를 “죽변고등학교”로, 약목고등학교의 위치란 중 “복성리 777”를 “무림리 1108”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중 효자초등학교는 2008년 7월 1일, 봉황초등학교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유치원	【별표 1】 유치원

명 칭	위 치
신	설
전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636
경주초등학교화천분교장병설유치원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330
신	설
금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김천시 삼락동 328
농소초등학교봉곡분교장병설유치원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1214
신	설
해평초등학교일선분교장병설유치원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600
상모유치원	구미시 상모동 1
구미신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미시 신평동 113-2
순흥초등학교배점분교장병설유치원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182-1

명 칭	위 치
포항해맞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항시 북구 환호동 442
삭	제
삭	제
금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339
삭	제
삭	제
김천유치원	김천시 삼락동 328
삭	제
상모유치원	구미시 상모동 41
구미신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미시 신평동 99-3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유치원	【별표 1】 유치원

명 칭	위 치
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영천시 금호읍 원기리 277
고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149-3
이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291
개진초등학교영동분교장병설유치원	고령군 개진면 생리 251
다산초등학교벌지분교장병설유치원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63
대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산18-1
예천동부초등학교보문분교장병설유치원	예천군 보문면 수계리 659

명 칭	위 치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대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880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초등학교	【별표 2】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죽장초등학교죽북분교장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덕리 276
신	설
효자초등학교	포항시 남구 효자동 43
신	설
대방초등학교	김천시 조마면 대방리 539
농소초등학교봉곡분교장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1214
북후초등학교연곡분교장	안동시 북후면 연곡리 414-1
해평초등학교일선분교장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600
상모초등학교	구미시 상모동 1
금오초등학교	구미시 원남동 503
구미신평초등학교	구미시 신평동 113-2
신	설
순흥초등학교배점분교장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182-1
창산초등학교	영천시 금호읍 원기리 277

명 칭	위 치
삭	제
포항해맞이초등학교	포항시 북구 환호동 442
효자초등학교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토지구획정리지구 59블럭 1롯트
금장초등학교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339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상모초등학교	구미시 상모동 41
금오초등학교	구미시 원남동 504
구미신평초등학교	구미시 신평동 99-3
구미봉곡초등학교	구미시 봉곡동 190
삭	제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초등학교	【별표 2】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영순초등학교영창분교장	문경시 영순면 말응리 524
신	설
신상초등학교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1
고로초등학교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149-3
이두초등학교비안분교장	의성군 비안면 서부리 35
칠곡초등학교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129-5
직동초등학교	고령군 개진면 직리 804-2
개진초등학교영동분교장	고령군 개진면 생리 251
다산초등학교벌지분교장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63
대교초등학교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산18-1
예천동부초등학교보문분교장	예천군 보문면 수계리 659
예천남부초등학교신당분교장	예천군 호명면 내신리 362
은풍초등학교은계분교장	예천군 상리면 석묘리 389
감천초등학교옥천분교장	예천군 보문면 옥천리 242
태하초등학교	울릉군 서면 태하리 521-2

명 칭	위 치
삭	제
봉황초등학교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81-14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대교초등학교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880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남양초등학교 태하분교장	울릉군 서면 태하리 521-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중학교	【별표 3】 중학교

명 칭	위 치
신	설
금오중학교	구미시 임오동 127-2
산동중학교	구미시 산동면 동곡리 934
신	설
중동중학교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872

명 칭	위 치
화랑중학교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191**
금오중학교	구미시 **임은동 128**
산동중학교	구미시 산동면 동곡리 **933**
광평중학교	**구미시 광평동 산63-3**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고등학교	【별표 4】 고등학교

명 칭	위 치
영주부석고등학교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 501-1
비안고등학교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341
약목고등학교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777
죽변종합고등학교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215
매화종합고등학교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1141

명 칭	위 치
삭	제
삭	제
약목고등학교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1108**
죽변고등학교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215
삭	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 및 경북 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지역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경상북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각각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마일리지 부여,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7조(창안상) ①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경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②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제안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각종 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9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경북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 선양한 경우
3.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학교 육성발전에 공헌한 경우

제10조(공적심사) ①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 또는 유관기관·단체로부터 표창추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표창권자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관리국장 및 본청 담당관·과장이 된다.

③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해당 표창 주관 부서의 담당장학관(연구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교육감 표창은 각급기관의 장(본청의 각 국장·담당관 및 과장 포함)이 추천한다. 다만,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은 당해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교육장 표창은 소속기관의 장(지역교육청의 각 국장·과장 포함)이 추천한다.

③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이중 표창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표창대장)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 및 제12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에 의한 표창 창권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제5조 제1항 관련)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성명

(문 안)

년 월 일

경상북도교육감 ○○○ (인)
(또는 ○○교육청교육장 ○○○ (인))

[별지 제2호 서식](제5조 제1항 관련)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성명

(문 안)

년 월 일

경상북도교육감 ○○○ (인)
(또는 ○○교육청교육장 ○○○ (인))

[별지 제3호 서식](제5조 제1항 관련)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성명

(문 안)

년 월 일

경상북도교육감 ○○○ (인)
(또는 ○○교육청교육장 ○○○ (인))

[별지 제4호서식](제12조 제4항 관련)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 면)

| | | |

(뒷 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⑲연 월 일	⑳이 력	㉑연 월 일	㉒이 력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㉓ 연 월 일	㉔ 내 용	㉕ 연 월 일	㉖ 내 용
㉗ 공적사항			

[별지 제5호 서식](제16조 관련)

표 창 대 장

번호	표 창 대 상 자					공적 내용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관련 문서 번호	기록자
	소속	직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성별					

※ “기록자”란은 반드시 표창주관부서 업무담당자 직·성명을 기재할 것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같은 조 제2호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용도변경"을 "용도변경 및 폐지"로 한다.

제24조 제6항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증대시설 용도로 대부(다만, 단체 또는 사인이 대부할 경우 제외)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제1항 본문 중 "영 제35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00분의 700”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1,000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단체 또는 사인이 대부할 경우 제외) : 1,000분의 300

제2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5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본문 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을 “(단독주택의 경우 200㎡ 한도)”로 하며, 단서조항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건축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 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 제5호 본문 중 “제1호”를 “제4호”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제1항의 본문 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교육청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 교육 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3 ~ 5.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 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위임사무)①교육감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생 략)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용도변경 다 ~ 라. (생 략) 2. (생 략) ②교육장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용도변경 4. (생 략) ③ (생 략)	제4조(위임사무)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나.---------- ---------용도변경 및 폐지 다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용도변경 및 폐지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4조 (대부료의 요율) ① ~ ⑤ (생 략) ⑥「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폐교재산평가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1 ~ 4. (생 략) < 신 설 >	제24조 (대부료의 요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1 ~ 4. (현행과 같음)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증대시설 용도로 대부(다만, 단체 또는 사인이 대부할 경우 제외)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제25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25조 < 삭 제 >**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1,000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제28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1,000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단체 또는 사인이 대부할 경우 제외) : 1,000분의 300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현 행	개 정 안
제35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 3. (생 략) 4.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 포함)**----------. < 신 설 >	제35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1. **< 삭 제 >** 2 ~ 3. (현행과 같음) 4. ---------- **(단독주택의 경우 200㎡ 한도)** ----------.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5.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 자의 공동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5.---------- ---------- ---------- ------ **제4호** ---------- ---------- ---------- ----------
제40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0조 < 삭 제 >**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 나. (생 략)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 ---------- ---------- ----------**3,000만원** ----------. 1. ---------- ---------- **600만원**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2. ---------- ---------- **300만** ---------- ---------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를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가목중“사지·고분·패총·성지·궁지·요지·유물 포함층”을“절터·옛무덤·조개무덤·성터·궁터·가마터·유물 포함층”으로 하고, 동조동항 동호 나목중“경승지로서”를 “경치가 좋은 곳으로서”로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해제를 위한 사전심의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해제”

제6조제2항중“60인”을 “75인”으로 한다.

제24조의3제3항중“「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5항과 제6항”을“「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20조제5항과 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의 2제1항중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의 2”를 “「문화재보호법」 제 9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로 하고, 동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이 마련된 문화재주변에 건설공사를 할 경우 그 기준 범위 내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영향성 검토를

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 2제3항중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 2 단서규정”을 “「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52조제1항 단서규정”으로 하고, 동조 제6항중“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의 3 및 제3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 3(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군 관련조례에서 정한 용도 지역별 허용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33조의 2(매장문화재의 공고)시장·군수는 발굴 또는 지표조사로 인해 발견된 문화재의 발굴 또는 발견 사실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중 제26조,제27조,제32조제1항제1호·제3호“를“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로 하고,“도지정문화재로 가지정된 문화재”를“도 지정문화재로 가지정된 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한다.

제37조제1항 · 제2항 및 제3항중 “도지정문화재”를 각각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1조의 4내지 제11조의 7” 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 21조 내지 제 24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①이 조례에서 "도지정문화재"라함은 도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도지사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여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사지·고분·패총·성지·궁지·요지·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경승지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다.(생략) 4. (생략) ② ~③ (생략)	**제2조(정의)** ① ---------- ---------- **--문화재청장**---------- ---------- ---------- ---------- ----------. 1.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절터·옛무덤·조개무덤·성터·궁터·가마터·유물 포함층** ---------- ---------- 나. **경치가 좋은 곳으로서** ---------- --- 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사항)(생략)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해제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9. (생략)	**제5조(심의사항)** (현행과 같음)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해제를 위한 사전심의**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보호물 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해제** 3. ~9.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① (생략). ② 위원회의 정원은 6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구성)**① (현행과 같음). ② --------- **75인** ---------- ---------- ----------
제24조의3(문화재기술위원회의설치·운영) ①~② (생략) ③기술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5항과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이를 정한다.	**제24조의3(문화재기술위원회의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과 제6항**---------- ----------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2(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검토)① 행정 기관의 장은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검토)**①----------「**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1. 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이 마련된 문화재 주변에 건설공사를 할 경우 그 기준범위내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영향성 검토를 하지 아니한다.**
③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라 하여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인접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규정**----------.
④ ⑤ (생략)	④ ⑤ (현행과 같음))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⑥----------「**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 26조의 3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관련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허용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제 33조의 2 (매장문화재의 공고) 시장·군수는 발굴 또는 지표조사로 인해 발견된 문화재의 발굴 또는 발견사실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 제26조, 제27조, 제32조제1항제1호 제3호, 제33조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 제35조의 규정은 도지정문화재로 가지정된 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공개)** ①도지정문화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41조(준용)**① (생략). ②제24조의2의 문화재수리용역·시공의 평가기준·절차·방법 및 우수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1조의 4 내지 제11조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준용)** **제23조,제24조,제26조제32조**----------**도지정문화재로 가지정된 문화재와 문화재자료** ----------. **제37조(공개)**①**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②------**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③----------**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 **제41조(준용)**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의2를" "「지방자치법시행령」제3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월 2,040,000원**"을 "월정 수당의 지급기준은 **월 2,642,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 라한다)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33조 -------- 제33조---------- ---------- ---------- ----------
제3조(월정수당지급) ②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지급)**---------- ----------제34조의 ---------- ---------- ---------- ----------
제7조(월정수당지급기준)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월 2,040,000원 으로 한다.	**제7조(월정수당지급기준)**---------- ---------- 월 2,642,000원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가목중 “문화체육관광국”을 “관광산업진흥본부, 문화체육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과 그 소관) (생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과 그 소관)** (현행과 같음)
1~5.(생략)	1~5.(현행과 같음)
6. 통상문화위원회	6. --------
가. 투자통상본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관광산업진흥본부, 문화체육국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승인안 : 2건】

ㅇ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ㅇ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07. 11. .
제출자 :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 안 사 유

○ **투자유치팀 소관**

- 2007.5.21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한 미국 KL Fenix사에 저렴한 용지 공급으로 고도기술수반사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미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지분 매입
  - 산업자원부 75%, 도 12.5%, 구미시 12.5%

○ **노인복지과 소관**

- 치매환자의 적기요양 등 노인성 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로 노인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 **문화예술산업과 소관**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내에 건립된 복합문화센터와 상징탑을 (재)문화엑스포에서 기부함에 따라 이를 채납 하고자함
  - 도 50%, 경주시 50%

2. 근 거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

3. 주 요 골 자

○ 재산의 취득

- 토　　지 : 1건 (20,260.7㎡)
- 건　　물 : 2건 (6,832.6㎡)
- 기　　타 : 1건 (2,008.4㎡)

4. 재산의 취득·처분 내용

(단위 : ㎡, 천원)

구분	건　명	면　적	추 정 액	용도 및 필요성
취득	**소 계** 토 지 건 물 기 타	**29,101.7** 20,260.7 6,832.6 2,008.4	**26,096,076** 3,003,251 13,431,825 9,661,000	
	구미 외국인기업전용 단지 매입	162,086중 20,260.7	24,026,008중 3,003,251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경상북도립김천노인 전문요양병원 증축	1,827.1	1,445,825	노인건강증진에 기여(시설확충)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복합문화센터 기부채납	10,011.1중 5,005.5	23,972,000중 11,986,000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시설로 활용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탑 기부채납	4,016.9중 2,008.4	19,322,000중 9,661,000	〃
처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5.<생략>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붙 임 :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07년도 수시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	20,260.7	3,003,251	1	20,260.7	3,003,251	
		건물				2	6,832.6	13,431,825	2	6,832.6	13,431,825	
		기타				1	2,008.4	9,661,000	1	2,008.4	9,661,000	
	1.매 입	토지				1	20,260.7	3,003,251	1	20,260.7	3,003,251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취득	토지										
		건물				2	6,832.6	13,431,825	2	6,832.6	13,431,825	
		기타				1	2,008.4	9,661,000	1	2,008.4	9,661,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2007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계		**4건**	**29,101.7**	**26,096,076**			
토지		**1건**	20,260.7	3,003,251			
건물		**2건**	6,832.6	13,431,825			
기타		**1건**	2,008.4	9,661,000			
1	공장용지	구미시 구미제4국가산업단지내 7B/1L외1필지	162,086중 20,260.7	24,026,008중 3,003,251	2007.12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	부지매입
2	건물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632-4외1필지	1,827.1	1,445,825	2007.12	도립김천노인 전문요양병원 증축	건물증축
3	건물	경주시 천군동 121외4필지	10,011.1중 5005.5	23,972,000중 11,986,000	2007.11	엑스포 복합문화센터 기부채납	건물신축
4	상징탑	〃	4,016.9중 2,008.4	19,322,000중 9,661,000	2007.11	엑스포 상징탑 기부채납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07. 11. .
제출자 :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 안 사 유

○ **노인복지과 소관**

- 치매환자의 적기 요양 등 노인성 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로 노인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지하1층 지상3층)

○ **소방본부 소관**

- 소방력 보강을 위한 포항남부소방서 제철119안전센터와 경주소방서 외동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

○ **기업지원팀 소관**

- 실라리안 전시판매장을 새롭게 확장 이전하고자 기존의 경상북도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전시판매장을 매각처분

2. 근 거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

3. 주 요 골 자

○ 재산의 취득

- 토　　지 : 2건 (4,183.3㎡)
- 건　　물 : 3건 (3,296.3㎡)

○ 재산의 처분

- 토　　지 : 1건 (340.2㎡)
- 건　　물 : 1건 (530.5㎡)

4. 재산의 취득·처분 내용

(단위 : ㎡, 천원)

구분	건　명	면　적	추 정 액	용도 및 필요성
취득	**소 계** 토 지 건 물	**7,479.6** 4,183.3 3,296.3	**3,816,001** 570,001 3,246,000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1,968.3	1,446,000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시설확충)
	포항제철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부지매입	2,533.3	320,001	소방력 보강
	포항제철119안전센터 이전 건물신축	664	900,000	〃
	경주외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부지매입	1,650	250,000	〃
	경주외동119안전센터 이전 건물 신축	664	900,000	〃
처분	**소 계** 토 지 건 물	**870.7** 340.2 530.5	**1,588,336** 1,224,720 363,616	
	경상북도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부지 매각	340.2	1,224,720	이전계획
	경상북도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건물 매각	530.5	363,616	이전계획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5.<생략>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붙 임 :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0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	2,533.3	320,001	1	1,650	250,000	2	4,183.3	570,001	
		건물	2	2,632.3	2,346,000	1	664	900,000	3	3,296.3	3,246,000	
		기타										
	1.매 입	토지	1	2,533.3	320,001	1	1,650	250,000	2	4,183.3	570,001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취득	토지										
		건물	2	2,632.3	2,346,000	1	664	900,000	3	3,296.3	3,246,000	
		기타										
처분	계	토지	1	340.2	1,224,720				1	340.2	1,224,720	
		건물	1	530.5	363,616				1	530.5	363,616	
		기타										
	4.매 각	토지	1	340.2	1,224,720				1	340.2	1,224,720	
		건물	1	530.5	363,616				1	530.5	363,616	
		기타										
	5.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2008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계		5건	7,479.6	3,816,001			
토지		2건	4,183.3	570,001			
건물		3건	3,296.3	3,246,000			
1	건물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372-1	1,968.3	1,446,000	2008.5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건물증축
2	대지	포항시 남구 호동 626-1	2,533.3	320,001	2008.3	제철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매입
3	건물	포항시 남구 호동 626-1	664	900,000	2008.5	〃	건물신축
4	답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526-2	1,650	250,000	2008.7	외동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매입
5	건물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526-2	664	900,000	2008.9	〃	건물신축

2008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매각대상수량	과표 또는 평가액	매각시기	매각사유	매수희망자 성명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1	대지	대구 수성구 범어동 13-8	340.2	340.2	1,224,720	'08. 2/4분기	실라리안 전시판매장 확장이전	경쟁입찰
2	건물	대구 수성구 범어동 13-8	530.5	530.5	363,616			
계	토지	1건	340.2	340.2	1,224,720			
	건물	1건	530.5	530.5	363,616			
	기타							

【예산안 : 4건】

- ㅇ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ㅇ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ㅇ 2007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ㅇ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소관기관 : 경상북도지사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 11. 9,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7. 12.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1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 5 : 상정·질의)
-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 6 : 상정·질의)
-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 7 : 상정·질의)
-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0 : 상정·질의)
-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2 : 상정·토론·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본부장 이 주 석

나. 제안이유

- ○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4. 2008년도 재정운용 방향

- ○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로 삶의 질 향상
- ○ FTA 대비 경쟁력 강화로 안정적 농어가 소득 지원
- ○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균형개발로 지역발전 기반구축
- ○ 환경·수질분야 지원 강화로 쾌적한 생활여건과 생태조성
- ○ 레저관광 수요부응과 전통문화유산의 개발·보존
- ○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 ○ 사회공공질서 유지와 선진행정 구현

5.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156,784**	**100.0**	**3,908,543**	**100.0**	**248,241**	**6.4**
일 반 회 계	**3,430,200**	**82.5**	**3,151,657**	**80.6**	**278,543**	**8.8**
특 별 회 계	**726,584**	**17.5**	**756,886**	**19.4**	**-30,302**	**-4.0**
의료급여기금운영	380,139	9.1	381,660	9.8	-1,521	-0.4
치 수 사 업	24,207	0.6	32,844	0.8	-8,637	-26.3
경도대학운영	7,812	0.2	6,768	0.2	1,044	15.4
광역교통시설	7,571	0.2	7,606	0.2	-35	-0.5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0,200	1.2	46,710	1.2	3,490	7.5
지역개발기금운영	256,655	6.2	281,298	7.2	-24,643	-8.8

※ 2007, 2008년도 재정자립도 : 21.9 %, 20.6%(도본청)

2)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156,784**	**100.0**	**3,908,543**	**100.0**	**248,241**	**6.4**
자 체 수 입	1,099,941	26.5	1,101,111	28.1	-1,170	-0.1
지방세 수입	730,000	17.6	670,000	17.1	60,000	9.0
세 외 수 입	369,941	8.9	431,111	11.0	-61,170	-14.2
경상적수입	66,100	1.6	63,826	1.6	2,274	3.6
임시적수입	303,841	7.3	367,285	9.4	-63,444	-17.3
의 존 수 입	3,056,843	73.5	2,807,432	71.9	249,411	8.9
지방교부세	722,600	17.4	641,400	16.4	81,200	12.7
보 조 금	2,196,243	52.8	1,966,032	50.3	230,211	11.7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38,000	3.3	200,000	5.2	-62,000	-31.0

3) 세출예산

가) 분 야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156,784**	**100.0**	**3,908,543**	**100.0**	**248,241**	**6.4**
일반공공행정	708,954	17.1	698,922	17.9	10,032	1.4
공공질서및안전	168,397	4.1	151,324	3.9	17,073	11.3
교 육	7,529	0.2	4,067	0.1	3,462	85.1
문화및관광	180,212	4.3	199,004	5.1	-18,792	-9.4
환 경 보 호	295,786	7.1	277,901	7.1	17,885	6.4
사 회 복 지	1,215,734	29.2	1,004,231	25.7	211,503	21.1
보 건	46,281	1.1	56,800	1.5	-10,519	-18.5
농림해양수산	704,983	17.0	681,208	17.4	23,775	3.5
산업중소기업	108,898	2.6	111,172	2.8	-2,274	-2.0
수 송 및 교 통	220,357	5.3	219,779	5.6	578	0.3
국토및지역개발	183,148	4.4	178,049	4.6	5,099	2.9
과 학 기 술	21,077	0.5	25,547	0.7	-4,470	-17.5
예 비 비	40,000	1.0	51,787	1.3	-11,787	-22.8
기 타	255,428	6.1	248,752	6.4	6,676	2.7

나) 실원국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156,784**	**100.0**	**3,908,543**	**100.0**	**248,241**	**6.4**	
의회사무처	11,383	0.3	10,964	0.3	419	3.8	
공보관실	1,381	0.0	988	0.0	393	39.8	
새경북기획단	16,759	0.4	8,358	0.2	8,401	100.5	
기획조정본부	476,526	11.5	481,983	12.3	-5,457	-1.1	
경제과학진흥본부	138,193	3.3	145,334	3.7	-7,141	-4.9	
공무원교육원	4,487	0.1	4,150	0.1	337	8.1	
감사관실	385	0.0	371	0.0	14	3.8	
보건복지여성국	1,253,590	30.2	1,054,371	27.0	199,219	18.9	
행정지원국	347,563	8.4	333,673	8.5	13,890	4.2	
경도대학	7,812	0.2	6,768	0.2	1,044	15.4	
환경해양산림국	467,683	11.3	442,823	11.3	24,860	5.6	
보건환경연구원	7,574	0.2	8,413	0.2	-839	-10.0	
농수산국	514,606	12.4	499,902	12.8	14,704	2.9	
농업기술원	41,690	1.0	39,655	1.0	2,035	5.1	
투자통상본부	29,772	0.7	26,377	0.7	3,395	12.9	
문화체육관광국	166,455	4.0	192,119	4.9	-25,664	-13.4	
건설도시방재국	515,982	12.4	513,747	13.1	2,235	0.4	
소방본부	154,943	3.7	138,547	3.5	16,396	11.8	

나.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3,430,200**	**100.0**	**3,151,657**	**100.0**	**278,543**	**8.8**
지 방 세 수 입	730,000	21.3	670,000	21.3	60,000	9.0
세 외 수 입	95,997	2.8	133,667	4.2	-37,670	-28.2
경상적수입	24,381	0.7	21,329	0.7	3,052	14.3
임시적수입	71,616	2.1	112,338	3.6	-40,722	-36.2
지 방 교 부 세	722,600	21.1	641,400	20.4	81,200	12.7
보 조 금	1,881,603	54.9	1,651,590	52.4	230,013	13.9
지 방 채 및 예치금 회수	0	0.0	55,000	1.7	-55,000	-100.0

2) 세출예산

가) 분야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3,430,200**	**100.0**	**3,151,657**	**100.0**	**278,543**	**8.8**
일반공공행정	452,299	13.2	417,624	13.3	34,675	8.3
공공질서및안전	168,397	4.9	151,324	4.8	17,073	11.3
교 육	3,845	0.1	1,309	0.0	2,536	193.7
문화및관광	180,212	5.3	199,004	6.3	-18,792	-9.4
환경보호	295,786	8.6	277,901	8.8	17,885	6.4
사회복지	835,595	24.4	622,571	19.8	213,024	34.2
보 건	46,281	1.3	56,800	1.8	-10,519	-18.5
농림해양수산	704,983	20.6	681,208	21.6	23,775	3.5
산업중소기업	58,698	1.7	64,462	2.0	-5,764	-8.9
수송및교통	212,786	6.2	212,173	6.7	613	0.3
국토및지역개발	158,941	4.6	145,205	4.6	13,736	9.5
과학기술	21,077	0.6	25,547	0.8	-4,470	-17.5
예 비 비	40,000	1.2	51,787	1.6	-11,787	-22.8
기 타	251,300	7.3	244,742	7.8	6,558	2.7

나) 조직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3,430,200**	**100.0**	**3,151,657**	**100.0**	**278,543**	**8.8**	
의회사무처	11,383	0.3	10,964	0.3	419	3.8	
공보관실	1,381	0.0	988	0.0	393	39.8	
새경북기획단	16,759	0.5	8,358	0.3	8,401	100.5	
기획조정본부	219,871	6.4	200,685	6.4	19,186	9.6	
경제과학진흥본부	87,993	2.6	98,624	3.1	-10,631	-10.8	
공무원교육원	4,487	0.1	4,150	0.1	337	8.1	
감사관실	385	0.0	371	0.0	14	3.8	
보건복지여성국	873,451	25.5	672,711	21.3	200,740	29.8	
행정지원국	347,563	10.1	333,673	10.6	13,890	4.2	
환경해양산림국	467,683	13.6	442,823	14.1	24,860	5.6	
보건환경연구원	7,574	0.2	8,413	0.3	-839	-10.0	
농수산국	514,606	15.0	499,902	15.9	14,704	2.9	
농업기술원	41,690	1.2	39,655	1.3	2,035	5.1	
투자통상본부	29,772	0.9	26,377	0.8	3,395	12.9	
문화체육관광국	166,455	4.9	192,119	6.1	-25,664	-13.4	
건설도시방재국	484,204	14.1	473,297	15.0	10,907	2.3	
소방본부	154,943	4.5	138,547	4.4	16,396	11.8	

다) 성질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3,430,200**	**100.0**	**3,151,657**	**100.0**	**278,543**	**8.8**
인 건 비	207,796	6.1	196,791	6.2	11,005	5.6
물 건 비	90,327	2.6	86,455	2.7	3,872	4.5
경 상 이 전	1,308,425	38.1	1,089,428	34.6	218,997	20.1
자 본 지 출	1,484,172	43.3	1,424,009	45.2	60,163	4.2
융 자 및 출 자	6,000	0.2	10,585	0.3	-4,585	-43.3
보 전 재 원	25,230	0.7	29,894	0.9	-4,664	-15.6
내 부 거 래	268,250	7.8	262,708	8.3	5,542	2.1
예비비 및 기타	40,000	1.2	51,787	1.6	-11,787	-22.8

다. 특별회계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26,584**	**100.0**	**756,886**	**100.0**	**-30,302**	**-4.0**
의료급여기금운영	380,139	52.3	381,660	50.4	-1,521	-0.4
치 수 사 업	24,207	3.3	32,844	4.3	-8,637	-26.3
경 도 대 학 운 영	7,812	1.1	6,768	0.9	1,044	15.0
광 역 교 통 시 설	7,571	1.0	7,606	1.0	-35	-0.5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0,200	6.9	46,710	6.2	3,490	7.5
지역개발기금운영	256,655	35.3	281,298	37.2	-24,643	-8.8

2)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26,584**	**100.0**	**756,886**	**100.0**	**-30,302**	**-4.0**
세 외 수 입	273,944	37.7	297,444	39.3	-23,500	-7.9
경상적 수입	41,719	5.7	42,497	5.6	-778	-1.8
임시적 수입	232,225	32.0	254,947	33.7	-22,722	-8.9
보 조 금	314,640	43.3	314,442	41.5	198	0.1
지 방 채	138,000	19.0	145,000	19.2	-7,000	-4.8

3) 특별회계 세출예산

가) 분야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26,584**	**100.0**	**756,886**	**100.0**	**-30,302**	**-4.0**
일반공공행정	256,655	35.3	281,298	37.2	-24,643	-8.8
교 육	3,684	0.5	2,758	0.4	926	33.6
사 회 복 지	380,139	52.3	381,660	50.4	-1,521	-0.4
산업중소기업	50,200	6.9	46,710	6.2	3,490	7.5
수 송 및 교 통	7,571	1.0	7,606	1.0	-35	-0.5
국토및지역개발	24,207	3.3	32,844	4.3	-8,637	-26.3
기 타	4,128	0.6	4,010	0.5	118	2.9

나) 조직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26,584**	**100.0**	**756,886**	**100.0**	**-30,302**	**-4.0**
기획조정본부	256,655	35.3	281,298	37.2	-24,643	-8.8
예 산 팀	256,655	35.3	281,298	37.2	-24,643	-8.8
경제과학진흥본부	50,200	6.9	46,710	6.2	3,490	7.5
과학기술진흥팀	50,200	6.9	46,710	6.2	3,490	7.5
보건복지여성국	380,139	52.3	381,660	50.4	-1,521	-0.4
사회복지과	380,139	52.3	381,660	50.4	-1,521	-0.4
건설도시방재국	31,778	4.4	40,450	5.3	-8,672	-21.4
균형개발과	7,571	1.0	7,606	1.0	-35	-0.5
치수방재과	24,207	3.3	32,844	4.3	-8,637	-26.3
경 도 대 학	7,812	1.1	6,768	0.9	1,044	15.4

다) 성질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26,584**	**100.0**	**756,886**	**100.0**	**-30,302**	**-4.0**
인 건 비	2,996	0.4	2,752	0.4	244	8.9
물 건 비	3,597	0.5	3,057	0.4	540	17.7
경 상 이 전	437,191	60.2	437,612	57.8	-421	-0.1
자 본 지 출	51,148	7.0	55,194	7.3	-4,046	-7.3
융 자 및 출 자	112,000	15.4	148,000	19.6	-36,000	-24.3
보 전 재 원	116,170	16.0	106,793	14.1	9,377	8.8
내 부 거 래	15	0.0	0	0.0	15	
예비비 및 기타	3,467	0.5	3,478	0.5	-11	-0.3

라. 계속비 사업

○ 2008년도 : 계속비 사업 없음

마. 지방채 발행계획(일반회계)

○ 2008년도 : 지방채 발행계획 없음

○ 지방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7.12월말 잔액			2008년 상 환 액		
	계	원 금	이 자	계	원 금	이 자
합 계	**337,484**	**271,640**	**65,844**	**34,680**	**24,740**	**9,940**
지역개발기금	297,187	237,200	59,987	27,002	18,700	8,302
청사정비기금	884	840	44	465	440	25
재 특 자 금	39,413	33,600	5,813	7,213	5,600	1,613

6. 기금운용계획(안)

가.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계	출연금	융자금 회수	차입금	예치금 회수	예수금	예탁금 이자수입	예치금 이자수입	기 타
합 계	**252,752**	**19,564**	**42,556**	**20,000**	**160,490**	**0**	**2,746**	**6,948**	**448**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기금	120						120		
중소기업육성기금	161,951	6,500	30,527	20,000	100,208			4,716	
문화예술진흥기금	439						159		280
체육진흥기금	545						545		
농어촌진흥기금	65,191	8,100	9,656		45,947			1,488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53						53		
포플러장학기금	8						8		
사회복지기금	239		14				225		
재해구호기금	545						545		
장애인복지기금	74						74		
노인복지기금	86						86		
식품진흥기금	15,180		1,267		13,090			655	168
여성발전기금	123						123		
청소년육성기금	117						117		
재난관리기금	5,655	4,964					691		
공무원주거 안정기금	2,426		1,092		1,245			89	
통합관리기금	11,406				6,416	2,304	2,450	236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금액으로 합계에는 미포함

나.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융자금	예탁금	예치금	기 타
합 계	**252,752**	**11,089**	**99,790**	**2,304**	**126,394**	**13,175**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기금	120	120				
중소기업육성기금	161,951	4,000	70,000		74,776	13,175
문화예술진흥기금	439	425		14		
체육진흥기금	545	500		45		
농어촌진흥기금	65,191		25,000		40,191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53	53				
포플러장학기금	8	8				
사회복지기금	239	225		14		
재해구호기금	545	502		43		
장애인복지기금	74	71		3		
노인복지기금	86	86				
식품진흥기금	15,180	1,390	3,630		10,160	
여성발전기금	123	120		3		
청소년육성기금	117	116		1		
재난관리기금	5,655	3,474		2,181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426		1,160		1,266	
통합관리기금	11,406				8,660	2,746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금액으로 합계에는 미포함

다.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07년도말 현재액ⓐ	'08년도 기금운용		'08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 계	**507,606**	**57,813**	**24,132**	**541,287**	**33,681**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기금	3,385	120	120	3,385	0
중소기업육성기금	297,015	38,073	17,175	317,913	20,898
문화예술진흥기금	4,539	439	425	4,553	14
체 육 진 흥 기 금	15,561	545	500	15,606	45
농어촌진흥기금	105,433	10,640	0	116,073	10,640
농업인학습단체 육 성 기 금	1,510	52	52	1,510	0
포플러장학기금	220	8	8	220	0
사 회 복 지 기 금	6,595	225	85	6,735	140
재 해 구 호 기 금	15,573	545	502	15,616	43
장애인복지기금	2,110	74	71	2,113	3
노 인 복 지 기 금	2,474	87	86	2,475	1
식 품 진 흥 기 금	22,000	863	1,390	21,473	-527
여 성 발 전 기 금	3,529	124	120	3,533	4
청소년육성기금	3,338	117	116	3,339	1
재 난 관 리 기 금	17,748	5,655	3,474	19,929	2,181
공무원주거안정기금	6,576	246	8	6,814	238
통 합 관 리 기 금	76,415	4,991	2,746	78,660	2,245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금액으로 합계에는 미포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증감조서 : 별첨)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증감조서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감 액	비 고
계		39건	4,318,000	
38	공 보 관 실	도청정문게시판 정비	17,000	
41	공 보 관 실	도정홍보GB포럼 차량임차	3,000	
42	공 보 관 실	도정홍보GB포럼 참석실비보상	36,000	
61	새 경 북 기 획 단	낙동강Eco-Guide 양성지원	50,000	
62	새 경 북 기 획 단	낙동강경관활용(강-산사-고택)예술제 개최	50,000	
62	새 경 북 기 획 단	낙동강길따라Eco관광가이드북등발간	50,000	
65	새 경 북 기 획 단	국책기관및국제행사유치를위한 세미나및포럼개최	100,000	
67	새 경 북 기 획 단	도민화합을 위한 방안연구 용역	50,000	
95	기 획 조 정 본 부	각종민간인시상(공통)	100,000	
103	기 획 조 정 본 부	직원전화친절모니터링	25,000	
167	경제과학진흥본부	소상공인창업박람회개최	100,000	
179	경제과학진흥본부	제8회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술대회 및 전시회운영	50,000	
184	경제과학진흥본부	로봇체험전시관운영지원	60,000	
200	경제과학진흥본부	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	30,000	
205	경제과학진흥본부	포항택시정보화시범사업	100,000	
241	공 무 원 교 육 원	화장실 개·보수	30,000	
242	공 무 원 교 육 원	잔디밭 복토공사	5,000	
316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북지회 운영지원	30,000	
510	행 정 지 원 국	지방세정종합평가 시군보조	300,000	
519	행 정 지 원 국	승용차 구입	45,000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감 액	비 고
544	행 정 지 원 국	연수원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20,000	
544	행 정 지 원 국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시행	16,000	
565	경 도 대 학	신입생모집 TV 및 라디오 광고	30,000	
566	경 도 대 학	통학버스 임차료	40,000	
573	경 도 대 학	문화체육관 주차장 설치	100,000	
581	경 도 대 학	OA사무실 비품구입	40,000	
582	경 도 대 학	대형승용차 구입	40,000	
640	환경해양산림국	사이버독도사이트 보강	50,000	
859	농 수 산 국	농업R&D활성화 사업	200,000	
906	농 수 산 국	쑥돈 생산기술 실용화 사업	30,000	
1022	농 수 산 국	낙동강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	366,000	
1144	농 업 기 술 원	사이버농업인조직체 육성	45,000	
1240	투 자 통 상 본 부	민노총사무실 임차료 등 지원	400,000	
1254	투 자 통 상 본 부	동북아경제통상네트워크 구축	50,000	
1295	문화체육관광국	경상북도영상위원회 사업 및 운영지원	100,000	
1311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해설사 연찬대회	60,000	
1337	문화체육관광국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수교육관 돔지붕 설치	500,000	
1365	건설도시방재국	지역현안도시토목사업 - 남구미IC진입로확장(대1-7)	500,000	
1413	건설도시방재국	교통소통대책사업시설비 ※ 문경가은우회(2공구)사업비중 감액	500,000	

【증액조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증 액	비 고
계		22건	3,518,500	
40	공 보 관 실	인터넷신문확대 보강	40,000	
167	경제과학진흥본부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업체이차보전금	100,000	
319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관 특화사업	25,000	
321	보건복지여성국	보훈단체특화사업비 지원	5,000	
400	보건복지여성국	민간보육시설보유교사 처우개선비	288,000	
539	행 정 지 원 국	자연사랑활동비 지원	20,000	
640	환경해양산림국	독도영유권 공고화 추진전략 연구용역	50,000	
870	농 수 산 국	벼 육묘공장 설치 및 개보수	60,000	
871	농 수 산 국	토종 곡물품질 가동시설 설치	30,000	
905	농 수 산 국	돈사환경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45,000	
912	농 수 산 국	착유시설 개선시설 사업	40,000	
1091	농 업 기 술 원	농업인신문보급 우송료지원	35,000	
1115	농 업 기 술 원	농심나눔쉼터	70,000	
1260	투 자 통 상 본 부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30,000	
1280	문화체육관광국	포항시립미술관 건립	300,000	
1293	문화체육관광국	청소년 교화사업	20,000	
1307	문화체육관광국	제10회 도장애인체육대회개최 지원	40,000	
1307	문화체육관광국	전국씨름왕선발대회참가 지원	10,000	
1396	건설도시방재국	방사능 방재훈련	10,000	
1482	소 방 본 부	소방공무원 워크샵	15,000	
1482	소 방 본 부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35,000	
96	기 획 조 정 본 부	예비비	2,250,500	

【부기신설】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증 액	비 고
계		12건	799,500	
	기 획 조 정 본 부	경북·대구 종합수련관건립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50,000	
	경제과학진흥본부	한수원(주)등 에너지기업 지역이전지원	100,000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안동애명복지촌 지붕보수	20,000	
	농 업 기 술 원	4H지도자 해외연수	15,000	
	투 자 통 상 본 부	영천 도남농공단지 소공원 조성	100,000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영덕 궁중무용 전승지원	10,000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전통민속놀이(원놀음)발굴 및 보전사업	54,500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시군유치지원	200,000	
	건 설 도 시 방 재 국	옥외광고물제도·정책·실태 등 선진사례 국외연수	45,000	
	건 설 도 시 방 재 국	북안도천~서면아화간 마을진입로 확·포장	50,000	
	건 설 도 시 방 재 국	방고개 및 소주골 진입도로 개설	80,000	
	의 회 사 무 처	의원연구단체 연구과제 용역	75,000	

【부기조정】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예산액	비 고
계		2건	110,000	
65	새 경 북 기 획 단	당초 : 도청이전위원회 평가단 운영 - 방송매체홍보 변경 : 낙동강 교육홍보 및 행사경비 - 방송매체홍보	50,000	
1103	농 업 기 술 원	당초 : 안동댐주변 안개 상습지 사과품질개선 변경 : FTA대응 사과상품성 제고 단지육성	60,000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소관부서 : 경상북도 교육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1월 9일, 경상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7년 12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년 12월 5일 : 상정·질의)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년 12월12일 : 토론·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예병윤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

4. 지방교육재정여건 및 방향

가. 지방교육재정 여건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08년에 수출증가세가 소폭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내수 증가세가 유지됨에 따라 2007년과 유사한 수준인 5.0%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지출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교부율이 증가됨에 따라 재정여건은 다소 개선될 전망임

나. 지방교육재정 전망

○ 내년도 실질 성장률 상승으로 내국세 세입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내국세분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인상됨에 따라 교육재정 여건은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

○ 유아교육,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지원금 감액과 계층·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투자확대를 비롯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증설 등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다. 중점 투자방향

○ 바른 삶을 실천하는 인성 함양

○ 기본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 꿈과 재능을 살리는 창의력 계발

○ 교육력을 북돋우는 행정구현

5. 예산안 주요 내용

가. 2008년도 예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2008년도 (A)	2007년도 (B)	증 감	
		A - B	증감율(%)
2,382,267	2,169,486	212,781	9.8

□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1,694억 8천 6백만원보다 2,127억 8천 1백만원(9.8%)이 증액된 2조 3,822억 6천 7백만원임.

나. 세입예산

□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장 관 별		2008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2,382,267	100.0	2,169,486	100.0	212,781	9.8
이전수입	소 계	2,305,208	96.7	2,068,313	95.3	236,895	11.5
	중앙정부이전수입	2,076,023	87.1	1,875,835	86.5	200,188	10.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28,173	9.6	191,526	8.8	36,647	19.1
	기타이전수입	1,012	0.0	952	0.0	60	6.3
자체수입	소 계	42,059	1.8	40,285	1.9	1,774	4.4
	교수-학습활동수입	28,129	1.2	26,644	1.2	1,485	5.6
	행정활동수입	242	0.0	213	0.0	29	13.5
	자산수입	3,260	0.1	3,001	0.1	259	8.6
	이자수입	10,109	0.4	10,114	0.4	△5	0.0
	잡수입	319	0.0	313	0.0	6	2.0
차입	소 계	0	0.0	25,888	1.2	△25,888	순감
	지방교육채및학교채	0	0.0	25,888	1.2	△25,888	순감
기타	소 계	35,000	1.5	35,000	1.6	0	0.0
	전년도이월금	35,000	1.5	35,000	1.6	0	0.0

다.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2,382,267**	**100.0**	**2,169,486**	**100.0**	**212,781**	**9.8**
유아및초등교육	2,242,370	94.1	2,095,274	96.6	147,096	7.0
평생·직업교육	4,254	0.2	2,873	0.1	1,381	48.1
교육일반	135,643	5.7	71,339	3.3	64,304	90.1

○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2,382,267**	**100.0**	**2,169,486**	**100.0**	**212,781**	**9.8**
유아 및 초등 교육	**소 계**	**2,242,370**	**94.1**	**2,095,274**	**96.6**	**147,096**	**7.0**
	인적자원운용	1,487,317	62.4	1,417,968	65.4	69,349	4.9
	교수-학습활동지원	96,205	4.0	75,436	3.5	20,769	27.5
	교육격차해소	62,453	2.6	72,502	3.3	△10,049	△13.9
	보건/급식/체육활동	15,069	0.6	12,880	0.6	2,189	17.0
	학교재정지원관리	497,067	20.9	455,490	21.0	41,577	9.1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4,259	3.5	60,998	2.8	23,261	38.1
평생 직업 교육	**소 계**	**4,254**	**0.2**	**2,873**	**0.1**	**1,381**	**48.1**
	평생교육	3,396	0.1	2,290	0.1	1,106	48.3
	직업교육	858	0.0	583	0.0	275	47.2
교육 일반	**소 계**	**135,643**	**5.7**	**71,339**	**3.3**	**64,304**	**90.1**
	교육행정일반	30,013	1.3	15,873	0.7	14,140	89.1
	기관운영관리	23,040	1.0	11,351	0.5	11,689	103.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75,590	3.2	37,429	1.7	38,161	102.0
	예비비및기타	7,000	0.3	6,686	0.3	314	4.7

○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
		금 액	%			
합 계		2,382,267	100.0	2,169,486	212,781	9.8
인건비	소 계	1,259,603	52.9	1,222,975	36,628	3.0
	유아및초등교육	1,259,307	52.9	1,222,718	36,589	3.0
	평생직업교육	87	0.0	41	46	112.1
	교육일반	209	0.0	216	△7	△3.2
물건비	소 계	79,278	3.3	69,932	9,346	13.4
	유아및초등교육	55,434	2.3	50,819	4,615	9.1
	평생직업교육	1,696	0.1	1,409	287	20.4
	교육일반	22,148	0.9	17,704	4,444	25.1
이전지출	소 계	163,721	6.9	138,390	25,331	18.3
	유아및초등교육	162,133	6.8	136,761	25,372	18.5
	평생직업교육	413	0.0	348	65	18.7
	교육일반	1,175	0.1	1,281	△106	△8.3
자산취득	소 계	118,206	5.0	70,430	47,776	67.8
	유아및초등교육	92,934	3.9	62,260	30,674	49.3
	평생직업교육	1,254	0.1	530	724	136.6
	교육일반	24,018	1.0	7,640	16,378	214.4
상환지출	소 계	74,789	3.1	37,429	37,360	99.8
	유아및초등교육	-	-	-	-	-
	평생직업교육	-	-	-	-	-
	교육일반	74,789	3.1	37,429	37,360	99.8
전출금	소 계	679,670	28.5	623,644	56,026	9.0
	유아및초등교육	672,562	28.2	622,718	49,844	8.0
	평생직업교육	804	0.0	544	260	47.8
	교육일반	6,304	0.3	382	5,922	1,550.3
예비비 및 기타	소 계	7,000	0.3	6,686	314	4.7
	유아및초등교육	-	-	-	-	-
	평생직업교육	-	-	1	△1	순감
	교육일반	7,000	0.3	6,685	315	4.7

○ 세출예산 기관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382,267	100.0	2,169,486	100.0	212,781	9.8
교육위원회	648	0.0	636	0.0	12	1.9
본 청	1,895,249	79.6	1,724,388	79.5	170,861	9.9
직속기관	12,439	0.5	8,091	0.4	4,348	53.7
지역교육청	473,931	19.9	436,371	20.1	37,560	8.6
포항교육청	77,616	3.3	73,997	3.4	3,619	4.9
경주교육청	47,073	2.0	49,929	2.3	△2,856	△5.7
김천교육청	27,928	1.2	24,287	1.1	3,641	15.0
안동교육청	26,044	1.1	25,556	1.2	488	1.9
구미교육청	52,612	2.2	57,053	2.6	△4,441	△7.8
영주교육청	21,280	0.9	19,737	0.9	1,543	7.8
영천교육청	18,661	0.8	16,952	0.8	1,709	10.1
상주교육청	25,677	1.1	19,490	0.9	6,187	31.7
문경교육청	13,136	0.6	11,427	0.5	1,709	15.0
경산교육청	39,349	1.7	37,431	1.7	1,918	5.1
군위교육청	9,067	0.4	5,798	0.3	3,269	56.4
의성교육청	10,559	0.4	10,005	0.5	554	5.5
청송교육청	7,780	0.3	7,207	0.3	573	8.0
영양교육청	4,767	0.2	4,394	0.2	373	8.5
영덕교육청	8,914	0.4	6,573	0.3	2,341	35.6
청도교육청	12,177	0.5	9,189	0.4	2,988	32.5
고령교육청	17,579	0.7	6,010	0.3	11,569	192.5
성주교육청	8,655	0.4	8,453	0.4	202	2.4
칠곡교육청	16,620	0.7	16,961	0.8	△341	△2.0
예천교육청	9,639	0.4	7,834	0.4	1,805	23.0
봉화교육청	7,310	0.3	6,413	0.3	897	14.0
울진교육청	8,344	0.4	9,168	0.4	△824	△9.0
울릉교육청	3,144	0.1	2,507	0.1	637	25.4

Ⅸ. 심사결과 : 수정가결(조서별첨)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 입 · 세 출 예산안 증감조서

【삭감조서】

□ 세 입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감 액	비 고
계		1건	**5,120,000**	
29	기 획 예 산 과	지방교육세전입금	5,120,000	

□ 세 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감 액	비 고
계		12건	**7,147,647**	
620	경상북도과학교육원	체험전시관현대화(창의존 현대화)	200,000	
1172	기 획 예 산 과	교단지원 및 교육여건개선 (교단지원, 교육여건개선)	3,811,062	
1184	기 획 예 산 과	교육재정확보우수사업 대응투자지원	2,000,000	
1205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사립학교 시설관리 (보건실리모델링-세명고)	27,500	
1205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사립학교 시설관리 (관류형증기보일러및배관교체-오천고)	33,985	
1205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사립학교 시설관리 (학교긴급시설 보수비 지원)	100,000	
1206	학 교 운 영 지 원 과	교육환경 개선 (화장실 보수-도개고)	72,000	
1208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우천통로설치 - 도개중	27,300	
1210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전자칠판 및 프로젝터설치(영덕여중)	55,800	
1242	재 무 관 리 과	사택확충(영해지역교직원사택매입)	600,000	
1259	교 육 시 설 과	전기시설개선(태양광가로등설치- 금오공고, 한국생명과학교)	120,000	
1271	교 육 시 설 과	학생수용시설 안전 및 긴급 시설복구비	100,000	

【증액조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증 액	비 고
계		1건	**2,027,647**	
1765	기 획 예 산 과	예비비	2,027,647	

2007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소관기관** : 경상북도지사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 11. 30,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7. 12. 5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21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2 : 상정·질의·토론·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본부장 이주석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4. **예산편성 방향**

○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 및 추가 확보액을 정리하고,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조정

○ 북부지역 우박피해 복구비와 자체사업 및 예비비 등을 계상하고연내 예산확보가 불가피한 경비를 반영

【 주 요 재 원 】

합 계	**173 억원**
○ 일 반 회 계	**154 〃**
● 세 외 수 입	67 〃
● 보 조 금	46 〃
● 지방교부세	41 〃
○ 특 별 회 계	**19 〃**

5. 예산(안)

가.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 한도액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4,222,558,995**	**126,676,770**
일 반 회 계	**3,458,393,000**	**103,751,790**
특 별 회 계	**764,165,995**	**22,924,980**
기 타 특 별 회 계	482,867,995	14,486,040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	384,600,000	11,538,000
치 수 사 업	35,062,614	1,051,879
경 도 대 학	7,114,840	213,445
광 역 교 통 시 설	9,380,541	281,416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46,710,000	1,401,30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81,298,000	8,438,940
지 역 개 발 기 금 운 영	281,298,000	8,438,940

나.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비율
계	**4,222,558,995**	**4,205,259,000**	**17,299,995**	0.4
일 반 회 계	**3,458,393,000**	**3,442,991,000**	**15,402,000**	0.4
특 별 회 계	**764,165,995**	**762,268,000**	**1,897,995**	0.2
의료급여기금운영	384,600,000	381,660,000	2,940,000	0.8
치 수 사 업	35,062,614	35,062,614	-	-
경 도 대 학 운 영	7,114,840	7,186,501	△71,661	△1.0
광 역 교 통 시 설	9,380,541	10,350,885	△970,344	△9.4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46,710,000	46,710,000	-	-
지 역 개 발 기 금 운 영	281,298,000	281,298,000	-	-

다. 세입·세출예산(안)

1)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율	기정예산액	구성비율	증(△)감	증감비율
합 계			4,222,558,995	100	4,205,259,000	100	17,299,995	0.4
세입	지방세수입		720,000,000	17.1	720,000,000	17.1	-	-
	세외수입		616,773,878	14.6	610,155,661	14.5	6,618,217	1.1
		경상적세외수입	71,504,637	1.7	66,664,327	1.6	4,840,310	7.3
		임시적세외수입	545,269,241	12.9	543,491,334	12.9	1,777,907	0.3
	지방교부세		688,448,563	16.3	684,388,184	16.3	4,060,379	0.6
	보조금		1,997,336,554	47.3	1,990,715,155	47.3	6,621,399	0.3
	지방채수입		200,000,000	4.7	200,000,000	4.8	-	-
세출	경상예산		311,396,061	7.4	320,749,825	7.6	△9,353,764	△2.9
		인건비	193,755,100	4.6	201,866,561	4.8	△8,111,461	△4.0
		경상적경비	117,640,961	2.8	118,883,264	2.8	△1,242,303	△1.0
	사업예산		3,122,334,909	73.9	3,113,746,170	74.0	8,588,739	0.3
		보조사업	2,425,209,731	57.4	2,415,693,857	57.4	9,515,874	0.4
		자체사업	697,125,178	16.5	698,052,313	16.6	△927,135	△0.1
	채무상환		169,930,087	4.0	170,669,587	4.1	△739,500	△0.4
	예비비등		618,897,938	14.7	600,093,418	14.3	18,804,520	3.1

2)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율	기정예산액	구성비율	증(△)감	증감비율
합 계		3,458,393,000	100	3,442,991,000	100	15,402,000	0.4
세입	지방세수입	720,000,000	20.8	720,000,000	20.9	-	-
	세외수입	314,036,013	9.1	307,329,567	8.9	6,706,446	2.2
	경상적세외수입	28,859,345	0.8	24,282,374	0.7	4,576,971	18.8
	임시적세외수입	285,176,668	8.2	283,047,193	8.2	2,129,475	0.8
	지방교부세	688,448,563	19.9	684,388,184	19.9	4,060,379	0.6
	보조금	1,680,908,424	48.6	1,676,273,249	48.7	4,635,175	0.3
	지방채	55,000,000	1.6	55,000,000	1.6	-	-
세출	경상예산	304,963,447	8.8	314,084,150	9.1	△9,120,703	△2.9
	인건비	191,247,904	5.5	199,114,274	5.8	△7,866,370	△4.0
	경상적경비	113,715,543	3.3	114,969,876	3.3	△1,254,333	△1.1
	사업예산	2,529,948,464	73.1	2,524,098,873	73.3	5,849,591	0.2
	보조사업	2,017,454,731	58.3	2,011,016,257	58.4	6,438,474	0.3
	자체사업	512,493,733	14.8	513,082,616	14.9	△588,883	△0.1
	채무상환	39,681,515	1.1	40,421,015	1.2	△739,500	△1.8
	예비비등	583,799,574	16.9	564,386,962	16.4	19,412,612	3.4

3)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 비율	기정예산액	구성 비율	증(△)감	증감 비율
합 계			764,165,995	100	762,268,000	100	1,897,995	0.2
세입	세 외 수 입		302,737,865	39.6	302,826,094	39.7	△88,229	△0.0
		경상적세외수입	42,645,292	5.6	42,381,953	5.6	263,339	0.6
		임시적세외수입	260,092,573	34.0	260,444,141	34.2	△351,568	△0.1
	보 조 금		316,428,130	41.4	314,441,906	41.3	1,986,224	0.6
	지 방 채		145,000,000	19.0	145,000,000	19.0	-	-
세출	경 상 예 산		6,432,614	0.8	6,665,675	0.9	△233,061	△3.5
		인 건 비	2,507,196	0.3	2,752,287	0.4	△245,091	△8.9
		경 상 적 경 비	3,925,418	0.5	3,913,388	0.5	12,030	0.3
	사 업 예 산		592,386,445	77.6	589,647,297	77.3	2,739,148	0.5
		보 조 사 업	407,755,000	53.4	404,677,600	53.1	3,077,400	0.8
		자 체 사 업	184,631,445	24.2	184,969,697	24.2	△338,252	△0.2
	채 무 상 환		130,248,572	17.0	130,248,572	17.1	-	-
	예 비 비 등		35,098,364	4.6	35,706,456	4.7	△608,092	△1.7

라. 실원국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실 국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비 고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222,558,995	100.0	4,205,259,000	100.0	17,299,995	0.4	
의회사무처	11,030,996	0.3	11,521,181	0.3	△490,185	△4.3	
공보관실	1,370,774	0.0	1,370,774	0.0	-	-	
새경북기획단	8,413,400	0.2	8,413,400	0.2	-	-	
기획조정본부	569,456,061	13.5	550,442,437	13.1	19,013,624	3.5	특별회계 포 함
경제과학진흥본부	168,278,230	4.0	155,951,357	3.7	12,326,873	7.9	〃
공무원교육원	4,344,250	0.1	4,476,720	0.1	△132,470	△3.0	
감사관실	343,446	0.0	370,632	0.0	△27,186	△7.3	
보건복지여성국	1,065,460,812	25.2	1,069,955,083	25.4	△4,494,271	△0.4	특별회계 포 함
행정지원국	413,428,287	9.8	413,347,809	9.8	80,478	0.0	
경도대학	7,114,840	0.2	7,186,501	0.2	△71,661	△1.0	특별회계
환경해양산림국	456,564,376	10.8	459,364,375	10.9	△2,799,999	△0.6	
보건환경연구원	10,478,589	0.2	10,641,769	0.3	△163,180	△1.5	
농수산국	511,946,195	12.1	511,442,547	12.2	503,648	0.1	
농업기술원	43,265,632	1.0	43,875,018	1.0	△609,386	△1.4	
투자통상본부	41,610,037	1.0	42,070,066	1.0	△460,029	△1.1	
문화체육관광국	220,219,845	5.2	219,599,651	5.2	620,194	0.3	
건설도시재난국	546,113,430	12.9	547,940,087	13.0	△1,826,657	△0.3	특별회계 포 함
소방본부	143,119,795	3.4	147,289,593	3.5	△4,169,798	△2.8	

마. 명시이월 사업

○ 총 52개 사업, 303억 5,702만원

- 일반회계 - 50개 사업, 280억 2,222만원
- 특별회계 - 2개 사업, 23억 3,480만원임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증감조서 : 별첨)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조서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 기)	조 정 내 역		
			당 초	조 정	감 액
계		2건			112,000
17	의 회 사 무 처	관용차량교체(1대)	27,000	0	27,000
244	농 수 산 국	우박피해사과 매입지원	1,674,750	1,589,750	85,000

【증액조서】

□ 세 입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 기)	조 정 내 역		
			당 초	조 정	증 액
계		1건			101,000
329	건설도시방재국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202,835,000	202,936,000	101,000

□ 세 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 기)	조 정 내 역		
			당 초	조 정	증 액
계		4건			213,000
332	건설도시방재국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23,417,000	23,518,000	101,000
	소 방 본 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0	33,000	33,000
신설	농 수 산 국	포항과메기축제지원	0	30,000	30,000
	기획조정본부	예비비			49,000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Ⅰ. 소관부서 : 경상북도 교육청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28, 경상북도교육감

2. 회부일자 : 2007. 12. 5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12. 12 : 상정·질의, 토론·의결)

Ⅲ.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예병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

Ⅳ.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1. 총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A - B	증감율(%)
세입·세출	2,432,881	2,340,017	94,864	4.1

2.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관 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2,434,881	2,340,017	94,864	4.1
의존수입	소 계	2,247,000	2,113,057	133,943	6.3
	국 가 부 담 수 입	1,996,888	1,910,835	86,053	4.5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72,210	1,877,225	94,985	5.1
	② 지방교육양여금	0	0	0	0.0
	③ 국고지원금	24,678	33,610	△8,932	△26.6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238,211	193,386	44,825	23.2
	① 법정전입금	228,119	191,526	36,593	19.1
	② 비법정전입금	10,092	1,860	8,232	442.6
	주민(기관등)부담수입및기타	11,901	8,836	3,065	34.7
자체수입	소 계	187,881	226,960	△39,079	△17.2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141,088	129,988	11,100	8.5
	① 재산수입	15,062	7,182	7,880	109.7
	② 입학금및수업료수입	28,062	26,668	1,394	5.2
	③ 사용료및수수료수입	218	213	5	2.5
	④ 잡수입	13,010	11,195	1,815	16.2
	⑤ 이월금	84,736	84,730	6	0.0
	지 방 교 육 채	46,793	96,972	△50,179	△51.7

3.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과목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장별	관별				
합계		2,434,881	2,340,017	94,864	4.1
교육	소계	846,681	814,398	32,283	4.0
	유치원	35,762	48,801	△13,039	△26.7
	초등학교	258,327	237,642	20,685	8.7
	중학교	222,016	214,619	7,397	3.4
	고등학교	302,608	288,755	13,853	4.8
	특수학교	27,968	24,581	3,387	13.8
평생교육	평생교육	7,686	6,203	1,483	23.9
급여관리	급여관리	1,348,668	1,385,868	△37,200	△2.7
교육행정	소계	93,731	86,048	7,683	8.9
	교육위원회	635	640	△5	△0.8
	교육청	38,323	35,636	2,687	7.5
	지역교육청	29,333	24,362	4,971	20.4
	교육지원기관	25,440	25,410	30	0.1
기타경비	소계	138,115	47,500	90,615	190.8
	지방채상환	96,054	40,814	55,240	135.3
	예비비	42,061	6,686	35,375	529.1

-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434,881**	**100.0**	**2,340,017**	**100.0**	**94,864**	**100.0**	**4.1**
인 건 비	**1,666,772**	**68.5**	**1,703,991**	**72.8**	**△37,219**	**△39.2**	**△2.2**
교원	1,123,612	46.2	1,143,110	48.8	△19,498	△20.5	△1.7
행정직	225,056	9.2	242,757	10.4	△17,701	△18.7	△7.3
사립학교인건비	318,104	13.1	318,124	13.6	△20	0.0	△0.0
경 상 비	**168,704**	**7.0**	**168,345**	**7.2**	**359**	**0.4**	**0.2**
기본운영비	15,892	0.7	15,359	0.7	533	0.6	3.5
학교운영비	152,812	6.3	152,986	6.5	△174	△0.2	△0.1
사 업 비	**461,290**	**18.9**	**420,181**	**18.0**	**41,109**	**43.3**	**9.8**
교육사업비	282,556	11.6	269,318	11.5	13,238	13.9	4.9
학교시설사업비	145,950	6.0	121,968	5.2	23,982	25.3	19.7
기타시설사업비	32,784	1.3	28,895	1.3	3,889	4.1	13.5
채 무 상 환	**96,054**	**3.9**	**40,814**	**1.7**	**55,240**	**58.2**	**135.3**
지방채상환	96,054	3.9	40,814	1.7	55,240	58.2	135.3
예비비 및 기타	**42,061**	**1.7**	**6,686**	**0.3**	**35,375**	**37.3**	**529.1**
예 비 비	42,061	1.7	6,686	0.3	35,375	37.3	529.1

- 기관별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434,881	2,340,017	94,864	4.1
교육위원회	635	640	△5	△0.8
교 육 청	1,912,381	1,830,743	81,638	4.4
지역교육청	521,865	508,634	13,231	2.6
포 항	80,495	80,614	△119	△0.1
경 주	57,526	56,565	961	1.7
김 천	29,676	26,670	3,006	11.3
안 동	29,735	27,874	1,861	6.7
구 미	62,390	64,532	△2,142	△3.3
영 주	23,585	21,883	1,702	7.8
영 천	20,334	19,993	341	1.7
상 주	26,701	24,719	1,982	8.0
문 경	13,210	13,063	147	1.1
경 산	40,474	43,369	△2,895	△6.7
군 위	6,985	6,916	69	1.0
의 성	12,308	11,851	457	3.8
청 송	8,095	7,641	454	6.0
영 양	6,504	5,746	758	13.2
영 덕	9,425	8,620	805	9.3
청 도	13,501	12,128	1,373	11.3
고 령	7,459	6,593	866	13.1
성 주	10,805	10,372	433	4.2
칠 곡	21,425	20,130	1,295	6.4
예 천	11,386	11,209	177	1.6
봉 화	8,153	8,112	41	0.5
울 진	17,542	16,867	675	4.0
울 릉	4,151	3,167	984	31.1

Ⅷ. 심사결과 : 원안가결(명시이월사업조서 수정)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수정)

(단위 : 천원)

이 월 과 목		사 업 명	수 정 내 역		
단위사업	세부사업		명시이월액	수정이월액	증 감
합계		1건	16,335	0	△16,335
비정규직 인 건 비 (p 661)	교무및행정 업무보조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원 인건비	16,335	0	△16,335

【기타안 : 1건】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괄

1. 감사기간 : 2007. 11. 14 ~ 11. 23 (10일간)

2. 대상실시기관 : 67개 기관 및 부서

(경상북도 및 도 의회사무처 43, 도교육청 12, 기타 12)

※ 사업장 현지확인 3개소

3. 감사결과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계	시정처리 요 구	건 의 · 촉구사항
합 계		**258**	**89**	**169**
의회운영	의회사무처	5	1	4
기획경제	**소 계**	**66**	**24**	**42**
	공보관실	4	2	2
	새경북기획단	7	1	6
	기획조정본부	7	2	5
	경제과학진흥본부	7	1	6
	공무원교육원	5	2	3
	경북개발공사	12	4	8
	경북교통연수원	4	2	2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7	4	3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5	3	2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3	1	2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	5	2	3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계	시정처리 요 구	건 의·촉구사항
행 정 보건복지	**소 계**	**38**	**12**	**26**
	감 사 관 실	3	0	3
	보건복지여성국	5	2	3
	행정지원국	4	1	3
	자연환경연수원	3	0	3
	노인전문간호센터	3	1	2
	경도대학	5	1	4
	포항의료원	5	3	2
	김천의료원	6	3	3
	안동의료원	4	1	3
교육환경	**소 계**	**29**	**12**	**17**
	환경해양산림국 (사업소 포함)	9	4	5
	보건환경연구원	2	0	2
	도교육청 (직속기관포함)	12	5	7
	지역교육청(공통)	6	3	3
농 수 산	**소 계**	**26**	**7**	**19**
	농수산국	6	2	4
	농업기술원	7	2	5
	가축위생시험소	3	1	2
	경영정보연구소	3	2	1
	생물자원연구소	2	0	2
	구미화훼시험장	2	0	2
	풍기인삼시험장	3	0	3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계	시정처리 요 구	건 의 · 촉구사항
통상문화	**소 계**	**55**	**16**	**39**
	투자통상본부	15	3	12
	문화체육관광국	17	7	10
	경상북도생활체육협의회	9	3	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7	1	6
	경상북도체육회	7	2	5
건설소방	**소 계**	**39**	**17**	**22**
	건설도시방재국	14	5	9
	종합건설사업소	10	5	5
	소방본부및소방서	15	7	8

의정활동보고서(제219회 정례회)

2008. 1 인쇄 / 2008. 1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602-5140

<비매품>